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이집트

2015. 12

세 법 연구 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본 보고서는 이집트 통관제도의 대부분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지면의 부족 및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한 가급적 최신의 내용을 수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사회·경제 상황에 따라 세제에 변화가 빈번하여 가장 최신의 내용을 본 보고서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집트의 관세에 대한 최소한의 길라잡이임을 밝히며,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이집트 조세청 및 재무부의 출판물 및 홈페이지와 관련 법령을 참조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관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및 관세청 해외통관 지원센터 홈페이지(www.customs.go.kr/foreign)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함을 밝혀 둔다.

목 차

I. 개 관	9
1. 일반 개황	9
2. 경제 개황	11
가. 이집트의 주요 경제지표	11
나. 이집트의 수출입 동향	13
다. 이집트의 외국인 투자 동향	17
3. 우리나라와 이집트의 교역 관계	20
4. 이집트의 무역협정 현황	23
II.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26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5』	26
2. 미국 국별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29
가. 기술장벽, 위생 및 검역조치	29
나. 수입 정책	30
다. 수입 장벽	31
라. 정부조달	31
마. 지식재산권	32
III. 이집트의 통관환경	33
1. 통관제도 개요	33
가. 통관 행정기관	33
나. 주요 항만	37

다. 관세 관계법령	40
2.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41
가. 관세	41
나. 판매세(General Sales Taxes)	46
다. 기타 수수료	47
3. 통관절차	49
가. 수입통관 절차	49
나. 수출통관 절차	51
4. 수출입규제	52
가. 수입규제 및 수출제한	52
나.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관리제도	58
다. 품질표시(labeling)	63
라. 반덤핑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	64
5. 보세제도 및 자유무역지대	66
가. 보세제도	66
나. 자유무역지대	67
6. AEO 제도	69
IV. 통관절차별 고려사항	72
1. 수입신고 전 준비 단계	72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72
나. 업무상 유의점	75
2. 수입신고 단계	77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77
나. 업무상 유의점	79
3. 물품검사 단계	80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80
나. 업무상 유의점	83

4.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85
가. 통관절차상 특이사항.....	85
나. 업무상 유의점.....	86
5. 요약.....	87
참고문헌.....	90
〈부록 Ⅰ〉 비즈니스 팁.....	95
〈부록 Ⅱ〉 주요 유관기관 정보.....	97
〈부록 Ⅲ〉 이집트 관세법.....	100

표목차

〈표 I -1〉 이집트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13
〈표 I -2〉 이집트의 수출입 추이	14
〈표 I -3〉 이집트의 권역별 수출현황	15
〈표 I -4〉 이집트의 권역별 수입현황	16
〈표 I -5〉 이집트의 품목별 수출입 실적	17
〈표 I -6〉 이집트의 연도별 FDI 추이	18
〈표 I -7〉 이집트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분야별 동향	18
〈표 I -8〉 對이집트 10대 투자국별 현황	19
〈표 I -9〉 對이집트 10대 수출 품목	21
〈표 I -10〉 對이집트 10대 수입 품목	22
〈표 I -11〉 이집트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	25
〈표 II -1〉 이집트의 무역 분야 순위 비교	28
〈표 III -1〉 이집트 항만별 통관 기간 및 비용	39
〈표 III -2〉 관세개정안(2013년 3월 26일)	42
〈표 III -3〉 2012년 이집트 관세율 수준	44
〈표 III -4〉 2012년 수입가격 기준 농산물비농산물의 관세 분포	44
〈표 III -5〉 이집트 수입 품목별 관세율	45
〈표 III -6〉 수입이 가능한 중고제품	53
〈표 III -7〉 요건 확인대상 수입물품	54
〈표 III -8〉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이집트의 수입 규제	65
〈표 III -9〉 AMS제도와 AEO제도 비교	71
〈표 IV -1〉 이집트 통관절차별 유의사항	87

그림목차

[그림 I -1] 우리나라와 이집트의 교역 규모	20
[그림 III-1] 이집트 통관 행정조직	34
[그림 III-2] 이집트 관세청 조직도	37
[그림 III-3] 이집트 항만 분포	38
[그림 III-4] 이집트 관세율 조회 화면과 관세율표 예시	46
[그림 III-5] 항만별 수입통관 비용 비교(2014년)	49
[그림 III-6] 이집트 수입물품 인증 절차	60
[그림 III-7] 이집트 ECM 마크	61
[그림 III-8] 이집트 자유무역지대 현황	69
[그림 IV-1] 수출입통관 구비서류 국가별 비교	73

I. 개 관

1. 일반 개황

- 이집트(Arab Republic of Egypt)는 아프리카 북동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며 카이로(Cairo)에 수도를 두고 있음¹⁾
 - 면적은 약 100만km²(1,001,450km²)로 한반도의 약 5배에 해당하며, 약 2,450km의 해안이 지중해와 홍해를 접하고 있으며 서쪽에 리비아, 북동쪽에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남쪽으로는 수단과 접경하여 아열대성 사막 기후를 보임
 - 인구 수는 2014년 기준으로 약 8,500만명으로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함
 - 이집트인, 베두윈인, 베르베르인으로 구성된 햄족 99%와 소수민족 1%로 구성됨
 - 영어와 프랑스어는 지식층에서 사용함

- 192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2011년 독재 정권이 종식되었고 현재는 2014년 정식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중심제의 공화제를 유지하고 있음²⁾
 - 1981년 이래 장기 집권해온 정부의 장기 독재, 물가상승, 높은 실업률, 경제정책 실패 등으로 인해 2011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발하였음
 - 2012년 선출된 무르시 대통령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이슬람주의 세력 확산에 반하여 2013년 군부 주도하에 대통령을 강제 축출하는 쿠데타가 발발되었으며, 이후에도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³⁾

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5 세계국가편람』, 2015, p.134

2)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14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중동』, 2014. 12, pp.375~37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카이로 무역관, 『KOTRA 국가정보: 이집트』, 2014. 6, p. 4

3) 지정학적으로 수에즈 운하를 관할하고 있어 미국의 대규모 군사원조를 받아 왔으며 2013년 군사적 쿠데타 이후 원조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나, 엘시시 대통령의 선출 이후 원조가 재개됨

- 이집트의 주요 산업구조는 석유화학 및 천연자원 추출산업(17.4%)과 제조업(16.4%)이 전체 산업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⁴⁾
 - 제조업은 1974년 투자법 제정을 계기로 1970년대 초에서 198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0%대를 상회하였음
 - 2013/2014 회계기준으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산업은 8.3%를 차지하는 천연자원 추출산업(8.3%)이며 건설업 부문이 5.6%의 성장률을 기록했음
 - 관광업은 2011년 이전에는 GDP의 12%를 차지하며 이집트 경제의 버팀목이었으나, 2011년 무르시 대통령 축출, 2014년 테러사건 등의 사회적 불안으로 인하여 2013/2014 회기에는 2.3%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집트의 농업은 총 GDP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고용의 27%를 책임지고 있음

- 한편, 이집트는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및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음⁵⁾
 - 세계경제포럼은 높은 정리해고비용, 낮은 생산성, 노무관리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이집트의 노동시장 효율성을 144개국 중 140위로 매우 낮게 평가함
 - 2014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700이집트파운드에서 1,200이집트파운드로 인상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허가기간을 제한하는 등 자국민 고용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카이로 무역관, 국가정보, 주요산업동향, http://www.kotra.or.kr/KBC/cairo/KTMIUI18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704&TOP_MENU_CD=33962&LEFT_MENU_CD=35649&MENU_CD=35649#nolink, 검색일자 2015. 11. 22.

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가별 투자환경위험평가, <http://keri.koreaexim.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2&menuid=007001005002&pagesize=10&boardtypeid=210&boardid=24924>, 2015. 6, 검색일자 2015. 8. 14.

2. 경제 개황

가. 이집트의 주요 경제지표

- 이집트의 2014년 GDP는 2,849억달러로 세계 40위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부터 2%대의 경제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해옴⁶⁾
 - 이집트는 1인당 GDP는 122위를, 1인당 구매력 평가기준(purchasing-power-parity) GDP는 24위를 차지하였음

- 2011년 이집트 혁명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 둔화를 보이다가, 2013년 걸프 국가들의 원조와 엘시시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정치적 안정으로 인하여 경제성장률이 상향되고 있는 추세임
 - IMF는 2015년 4월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집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발표하였는데,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 전방위적인 구조개혁 등을 바탕으로 성장률을 상향조정하였음

- 경기불황으로 관광, 건설산업 등 주요 고용분야였던 산업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이집트의 실업률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2014년에도 13.4%를 기록하였음⁷⁾
 - 이집트의 높은 실업률은 2011년에 발발한 이집트 시민혁명의 주요 요인의 하나로, 2012년 이집트 내각의 민간합동투자(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실업난을 해결하지 못함

- 물가상승률은 2012년 12.7%, 2013년 13.2%에서 2014년 15.6%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6) 2014~2015 세계 GDP 순위, <http://ooz.co.kr/126>, 검색일자 2015. 8. 16.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카이로 무역관, 국가정보, 경제동향 및 전망, http://www.kotra.or.kr/KBC/cairo/KTMIUI18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704&TOP_MENU_CD=33962&LEFT_MENU_CD=35649&MENU_CD=35649#nolink, 검색일자 2015. 11. 2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가별 투자환경위험평가, <http://keri.koreaexim.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2&menuid=007001005002&pagesize=10&boardtypeid=210&boardid=24924>, 2015. 6, 검색일자 2015. 8. 14.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이집트 중앙은행의 자국화폐 지원정책의 철폐와 정치적 불안에 따른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 및 환율 급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유가가 종류별로 40~175%까지 급등하면서 제조업 전반에 직접적인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이집트파운드(Egyptian Pound, EGP)는 엘시시 정부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걸프국가의 원조 등으로 2014년 연중 1달러당 7파운드 내외의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으며, 외환보유고 감소로 인하여 평가절하 움직임을 보이다가 2015년 12월 기준 1달러에 7.83파운드를 기록하고 있음⁸⁾

- 2014년 12월 카타르의 투자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서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5년 1월부터 공식환율과 암시장 환율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집트는 최근 정치적인 안정을 보이고 대규모 해외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잠재된 정치적 불안정, 지속적인 테러, 낙후된 인프라는 여전히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⁹⁾)지역으로서 부상하는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COMESA)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과 주요 수출국으로서 강점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규제에 관한 병목현상과 여전히 팽배한 관료주의로 인해 거시경제의 발달이 실물경제에서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¹⁰⁾

8) 1 EGP는 USD 0.13, 원화로는 148.79원 수준임(2015년 12월 기준)

9)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의라고도 하며, 걸프만 주변에서 발생한 정치적 불안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등 6개국이 상호 간의 경제 및 안전보장의 협력을 도모함

10) 농수산물유통공사,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동 이머징 마켓 진출여건(이집트 편)』, 2011. 6, p.11

〈표 I-1〉 이집트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구분(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국내경제	경상 GDP(억달러)	2,356	2,623	2,714	2,849	3,243
	1인당 GDP(달러)	2,930	3,178	3,250	3,303	4,153
	경제성장률(%)	1.8	2.2	2.1	2.2	4.2
	실업률(%)	10.4	12.4	13.0	13.4	13.9
	소비자물가상승률(%)	12.0	12.7	13.2	15.6	15.3
대외경제	환율(달러당 E£, 연중)	5.9	6.1	6.9	7.1	7.7
	경상수지(백만달러)	-7,901	-10,660	-2,258	-7,463	-8,901
	상품수지(백만달러)	-28,544	-36,761	-27,588	-28,113	-27,096
	서비스수지(백만달러)	11,733	12,690	8,743	8,722	7,433
	외환보유액(백만달러)	17,569	14,931	16,118	15,800	19,359

주: 2015년은 예상치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MF, Central Bank of Egypt 참고하여 저자 작성(2015년 4월 기준)

나. 이집트의 수출입 동향

- 이집트는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2013/2014 회계연도의 무역수지 적자는 414억 달러로 전년 대비 수출은 7.6% 감소하고, 수입은 4.7% 증가하였음
 - 2011년 시민혁명, 2013년 무르시 전 대통령 축출 등 정치적 불안을 거치며 악화된 경제상황에 따라 2011/2012 회계연도 이후 무역수지 적자폭이 3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됨
 - 2014년 들어 이집트의 주요 수출품목인 천연가스가 국내 공급량 부족으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

〈표 I-2〉 이집트의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0	27,256	13.2	52,815	18.3	-25,559
2011	31,529	15.7	62,156	17.7	-30,627
2012	29,240	-7.3	67,522	8.6	-38,282
2013	28,894	-1.2	65,152	-3.5	-36,258
2014	26,693	-7.6	68,189	4.7	-41,496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가의 지역별 수출입,

<http://stat.kita.net/stat/world/trade/CtrProd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15. 4. 13.

- 이집트는 러시아 및 EU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EU와의 수출입은 이집트 상품 교역 중 최대 규모를 차지함¹¹⁾
 - 2013/2014 회계기준으로 아랍지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52%가 증가하며 아시아를 제치고 교역규모 2순위를 차지함
 - 최대 교역대상 국가는 2012년 이후 미국에서 중국으로 변경됨

- 2013/201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EU는 이집트 총 수출액의 39%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권 역이며, 아랍지역(21%)과 아시아지역이 13%로 그다음을 차지함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집트 카이로 무역관, 국가정보, 수출입 동향, http://www.kotra.or.kr/KBC/cairo/KTMIUI18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704&TOP_MENU_CD=33962&LEFT_MENU_CD=35649&MENU_CD=35649#nolink, 2015. 5. 기준, 검색일자 2015. 8. 13.

〈표 I-3〉 이집트의 권역별 수출현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2013/ 14)	국명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계	26,992		25,071		26,988		26,119	
1	EU	11,437	42	9,071	36	8,903	33	10,134	39
2	아랍국가	4,864	18	5,324	21	5,160	19	5,469	21
3	아시아 (아랍 제외)	4,026	15	4,620	18	4,912	18	3,485	13
4	미국	3,600	13	3,431	14	3,757	14	2,510	10
5	유럽 국가 (EU 제외)	1,704	6	1,418	6	1,755	7	1,370	5
6	아프리카 (아랍 제외)	542	2	499	2	440	2	475	2
7	러시아 및 CIS 국가	191	1	107	0	150	1	182	1
8	호주	14	0	22	0	22	0	16	0

주: 1. 순위는 2013/14년 기준, 2014년 금액은 추정치

2. 자유무역지대 포함

출처: 이집트 통상진흥협회(EITP, Egyptian International Trade Point), Egyptian Foreign Trade With Economic Group, http://www.tpegypt.gov.eg/Statistics/Egyptian_Geographic_%20group.pdf, 검색일자 2015. 8. 13; 이집트 중앙은행 November 2014 Statistical Bulletin

□ 2013/2014년 회계연도 기준 수입의 경우 아랍지역이 28.1%로서 27.4%를 차지한 EU와 비슷한 규모이며 아시아지역은 20%를 기록함

○ 이집트의 수입 대상국은 아랍지역과 EU가 50% 이상을 차지함

〈표 I-4〉 이집트의 권역별 수입현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2013/ 14)	국명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계	54,095		59,210		57,682		59,281	
1	아랍국가	8,679	16	10,181	17	10,968	19	16,678	28.1
2	EU	18,707	35	19,282	33	17,682	31	16,229	27.4
3	아시아 (아랍 제외)	10,964	20	11,675	20	11,925	21	12,158	20.5
4	유럽 국가 (EU 제외)	4,698	9	6,099	10	5,078	9	4,287	7.2
5	미국	5,812	11	4,814	8	3,977	7	4,167	7.0
6	러시아 및 CIS 국가	1,073	2	2,578	4	2,045	4	2,633	4.4
7	아프리카 (아랍제외)	625	1	505	1	561	1	476	0.8
8	호주	352	1	427	1	356	1	257	0.4

주: 1. 2014년은 추정치
2. 자유무역지대 포함

출처: 출이집트 통상진흥협회(EITP, Egyptian International Trade Point), Egyptian Foreign Trade With Economic Group, http://www.tpegypt.gov.eg/Statistics/Egyptian_Geographic_%20group.pdf, 검색일자 2015. 8. 13; 이집트 중앙은행 November 2014 Statistical Bulletin

□ 이집트의 주요 수출입 품목은 원유 및 원유제품과 화학·의약품으로 2013년 전기제품과 엔지니어링 제품의 수출이 급증하였음

○ 원유 및 원유제품은 아랍지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임

– 하지만 2013/2014년 회계연도에는 천연가스가 이집트 내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석유제품의 수출이 감소함

〈표 I-5〉 이집트의 품목별 수출입 실적

(단위: 백만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	2013	2014. 6.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품목	2013	2014. 6.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1	원유 및 원유제품	7,553	3,471	-11	전기·엔지니어링	14,558	6,905	-7
2	화학·의약품	5,060	2,614	6	화학·의약품	9,371	4,269	-10
3	면, 섬유, 의류	3,098	1,530	-5	원유 및 원유제품	9,264	3,463	-47
4	농산물	2,796	1,925	3	금속 및 금속제품	8,344	3,877	-13
5	금속 및 금속제품	2,590	1,043	-31	농산물	7,550	3,832	6
6	전기·엔지니어링	1,637	1,210	44	면, 섬유, 의류	3,201	1,387	-11
7	식품	1,412	764	-4	식품	2,716	1,347	1
8	책·종이	408	180	-23	책·종이	1,387	572	-23
9	가구 및 가구용품	377	187	-9	가구 및 가구용품	287	132	-8
10	가죽 및 가죽제품	176	108	20	가죽 및 가죽제품	61	26	-19

출처: 이집트 통상진흥협회(EITP, Egyptian International Trade Point), Egyptian Foreign Trade With World, http://www.tpegypt.gov.eg/Statistics/Egyptian_%20sectors.pdf, 검색일자 2015. 8. 13.

다. 이집트의 외국인 투자 동향

- 2013년 출범한 임시정부의 FDI 유치, 관광산업 진흥정책, 그리고 투자촉진법 개정 등에 힘입어 2013/2014년 이집트 FDI 순유입액은 약 41억달러로 증가하였음¹²⁾
 - 2014년 엘시시 대통령의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은 관광산업 개발, 금융조달 지원, 주요 산업도시 및 자유무역지대 개발 등을 기조로 함
 - 투자유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FDI 유입액이 9% 증가함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집트 카이로 무역관, 국가정보, 외국인 투자 동향, http://www.kotra.or.kr/KBC/cairo/KTMIUI18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704&TOP_MENU_CD=33962&LEFT_MENU_CD=35649&MENU_CD=35649#nolink, 2015. 5. 기준, 검색일자 2015. 8. 13.

〈표 I -6〉 이집트의 연도별 FDI 추이

(단위: 백만달러, %)

연도	2009/2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순 FDI	6,758	2,188	3,982	3,753	4,119
증감률	-	-209	45	-6	9

주: 2014년은 잠정치

출처: 이집트 중앙은행, Oct 2014 Statistical Bulletin,

[http://cbe.org.eg/CBE_Bulletin/2014/Bulletin_2014_10_Oct/48_32_Net_Foreign_Direct_Investment_In_Egypt_\(FDI\)_by_country.pdf](http://cbe.org.eg/CBE_Bulletin/2014/Bulletin_2014_10_Oct/48_32_Net_Foreign_Direct_Investment_In_Egypt_(FDI)_by_country.pdf), 검색일자 2015. 4. 20.

□ 외국인 투자는 크게 신규 공장 설립이나 기존 기업의 지분 참여를 통한 투자, 정부자산 매각 참여, 부동산, 그리고 석유, 가스 등 에너지 투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집트 정부의 투자유치 분야 다양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주로 에너지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임

○ 석유, 천연가스, 태양력 발전과 같은 에너지 분야와 금융, 제약, 식품 등의 각종 산업에 투자하고 있음¹³⁾

〈표 I -7〉 이집트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분야별 동향

(단위: 백만달러, %)

	7~9월(1분기)			
	2012/13	비중	2013/14	비중
총 FDI 유입	2255.3	100	2365.9	100
석유	1677.2	74.4	1902.6	80.4
제조업	151.6	6.7	50.7	2.1
농업	0.6	0	1.2	0.1
건설	3.9	0.2	12.2	0.5
서비스	103	4.6	45.8	2.0
기타	319.4	14.1	353.4	14.9

출처: 이집트 중앙은행(Central Bank of Egypt), Economic Review Volumes. 54, No. 1,

<http://www.cbe.org.eg/NR/rdonlyres/EBB0F024-4D32-4049-BC3E-178B565C08C5/2553/EconomicReviewVolumesVol54No120132014.pdf>, 2013~2014, 검색일자 2015. 4. 25.

13) KOTRA 카이로 무역관, 국가정보-외국인 투자동향,

http://www.kotra.or.kr/KBC/cairo/KTMIUI18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704&TOP_MENU_CD=33962&LEFT_MENU_CD=35649&MENU_CD=35649#nolink, 검색일자 2015. 7. 13.

- 이집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미국과 EU가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과 벨기에의 투자 규모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국가로부터의 투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2013/2014년도에는 감소세를 보임
 -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미국의 경제상황, 이집트의 정치적 불안 등에 기인하여 변동폭이 심함

〈표 I -8〉 對이집트 10대 투자국별 현황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¹⁾
미국	3515.0	1424.9	1790.5	577.6	2182.9	2230.3
영국	3231.8	4926.1	4307.1	5819.7	3997.4	5115.6
벨기에	1541.6	930.1	776.7	2089.2	719.6	617
아랍에미리트공화국	1037.4	303.5	410.8	559.8	480.6	401.2
사우디아라비아	514.1	323.4	206.3	240.4	191.7	284.4
프랑스	254.3	286.2	227.0	315.6	266.1	347.4
네덜란드	134.0	128.8	145.6	409.4	163.5	192.4
독일	102.6	109.7	274.5	202.5	186.4	194.2
카타르	53.0	70.4	191.5	34.9	375.6	109.1
바레인	20.5	64.1	66.2	152.5	262.7	193.7

주: 1) 2014년은 잠정치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카이로 무역관, 국가정보-외국인 투자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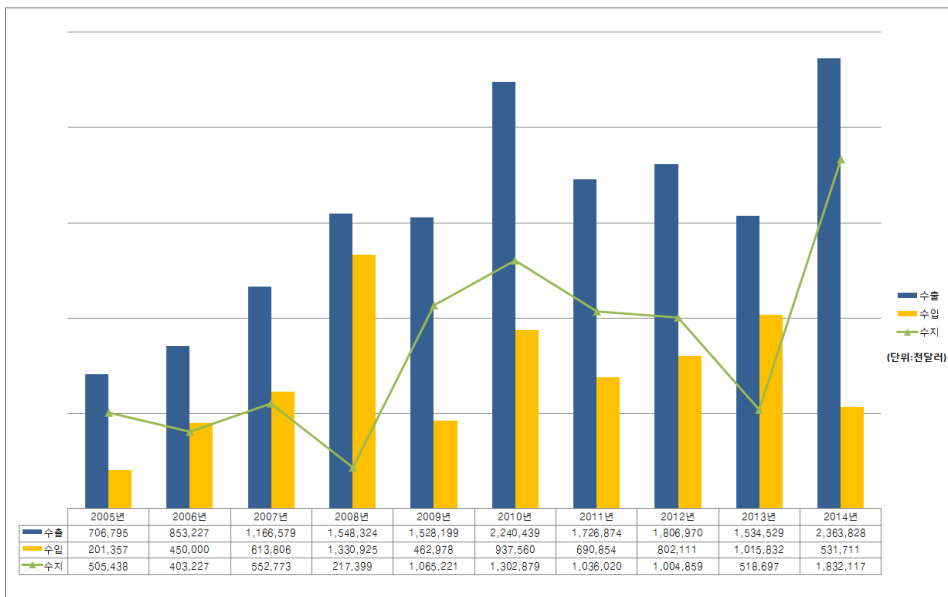
http://www.kotra.or.kr/KBC/cairo/KTMIUI18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704&TOP_MENU_CD=33962&LEFT_MENU_CD=35649&MENU_CD=35649#nolink, 2015. 5, 검색일자 2015. 11. 22.

3. 우리나라와 이집트의 교역 관계

- 우리나라와 이집트의 교역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무역국가들 가운데 33위를 차지하였으며, 2013년 43위, 2012년 38위 그리고 2011년 40위에 그쳤던 것에 비해 규모가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은 중국, 미국, 일본 순이며, 25개 경제권 가운데 이집트가 속해 있는 COMESA와는 24위, G20개발도상국과는 8위를 기록하였음

- 2014년 우리나라의 對이집트 수출은 23억 6,382만달러, 수입은 5억 3,171만달러로 전년 대비 무역수지가 대폭 증가함
 - 2014년 교역 규모는 약 28억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5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수치임
 - 2005년 약 9억달러였던 교역규모는 2006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0년 약 31억달러를 기록한 뒤, 2011년부터는 약 25억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I-4] 우리나라와 이집트의 교역 규모



출처: 한국무역협회, IMF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우리나라의 대 이집트 주요 수출 품목은 MTI 4단위 기준으로 승용차, 자동차 부품과 합성수지로 이들이 전체 대 이집트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평판디스플레이, 기타 석유화학제품, 그리고 석유화학합성원료 또한 상위 수출 품목에 속함
- 2014년 이집트 자동차 시장은 전년 대비 50%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며 크게 성장했고 2015년에도 20% 이상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¹⁴⁾
- 특히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음

〈표 I-9〉 對이집트 10대 수출 품목

(단위: 천달러, %)

순위	2013년			2014년		
	품목명	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품목명	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총계	1,534,529	-15.1	총계	2,363,828	54.0
1	승용차	270,878	-44.5	승용차	350,453	29.4
2	자동차부품	179,101	-15.6	자동차부품	207,214	15.7
3	합성수지	158,638	11.4	합성수지	204,969	29.2
4	기타석유화학제품	67,461	3.4	평판디스플레이	168,441	17.8
5	평판디스플레이	60,521	33.7	컬러TV	120,068	44.6
6	폴리에스터직물	48,008	20.3	석유화학합성원료	105,099	16.5
7	석유화학합성원료	39,565	56.7	화학기계	87,441	16.7
8	가열난방기	34,045	-51.8	기타석유화학제품	66,615	-1.3
9	아연도강판	33,729	4.1	경유	66,082	0.0
10	알루미늄케이블	28,320	23.5	폴리에스터직물	54,013	12.5

주: MTI 4단위 기준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가 수출입, <http://stat.kita.net/stat/kts/ctr/Ctrltem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15. 4. 13.

14) 노정민(KOTRA 카이로 무역관), 한국산 자동차, 이집트 시장점유율 1위!,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6685&ARTICLE_SE=20302, 검색일자 2015. 4. 13.

-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품목으로 천연가스와 나프타가 전체 수입금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박류와 식물제의류 또는 편직제의류의 순으로 나타남
- 2014년에는 총수입액이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요 수입 품목인 천연가스의 수입이 급감한 데 기인함

〈표 I-10〉 對이집트 10대 수입 품목

(단위: 천달러, %)

순위	2013년			2014년		
	품목명	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품목명	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총계	1,015,832	26.6	총계	531,711	-47.7
1	천연가스	498,444	13.1	나프타	408,763	-8.9
2	나프타	448,458	54.1	천연가스	65,643	-86.8
3	LPG	21,652	0.0	박류	29,997	73.3
4	박류	17,311	147.9	식물제의류	3,111	54.7
5	편직제의류	4,640	8.0	편직제의류	2,742	-40.9
6	무선전화기	2,333	47.7	소가죽	2,409	44.7
7	식물제의류	2,011	21.6	기타비금속광물	1,641	-9.5
8	기타비금속광물	1,813	-31.0	시멘트	1,412	-3.9
9	기타고무제품	1,773	140.3	기타고무제품	1,386	-21.9
10	소가죽	1,665	0.0	구두	1,214	0.0

주: MII 4단위 기준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가 수출입, <http://stat.kita.net/stat/kts/ctr/CtrItem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15. 4. 13.

4. 이집트의 무역협정 현황

- 이집트 정부는 1995년 WTO 가입을 시작으로 세계 교역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EU, 미국의 양대 시장을 비롯해 아랍권, 동남부 아프리카와도 FTA를 체결했음¹⁵⁾
 - 인근 아프리카 및 중동권과의 FTA는 20개 회원국을 보유한 동남부 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¹⁶⁾)의 8개국(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아, 수단, 잠비아, 짐바브웨이, 지부티)과 아랍연맹 18개 국가에 이룸

-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은 무관세뿐만 아니라 산업 협력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무역협정으로, 이집트는 1998년 COMESA 회원국이 되었으며 2000년부터 COMESA 회원국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였음¹⁷⁾
 - 비관세 장벽 철폐, 대외 공동관세의 적용, 자본, 노동과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 기업법, 지식재산권, 투자 영역에서의 산업협력, 화폐동맹의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EU-이집트 연합협정(Egypt-EU Partnership Agreement)은 2001년에 체결, 2004년에 발효되어 이집트의 대EU 수출은 무관세로 이루어지며 EU의 대이집트 공산품 수출관세는 12년간 4단계에 걸쳐 철폐되고 있음
 - EU는 이집트의 주요 교역국이기도 하고 FDI의 원조국이기에 때문에 이집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협정임¹⁸⁾
 - 울, 면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이집트에서 생산되어 EU로 수입되는 HS코드 제

15) KOTRA 카이로 무역관, 『KOTRA 국가정보: 이집트』, 2014. 6, pp. 63~66

16)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앙골라, 부룬디, 코모로, 지부티, 이집트, 에티오피아, 케냐, 말라위, 짐바브웨, 모리셔스, 모잠비크, 잠비아, 나미비아, 루안다, 우간다, 수단, 탄자니아, 스와질란드,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에리트리아 등 총 21개국임

17) KOTRA 카이로 무역관, 『KOTRA 국가정보: 이집트』, 2014. 6, pp. 63~66

18) Embassy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Doing Business in Egypt: 2010 Guideline for Netherlands Companies, http://egypt.nlembassy.org/binaries/content/assets/postenweb/e/egypte/netherlands-embassy-in-cairo/import/products_and_services/guidelines-for-doing-business-in-egypt, August 2010, 검색일자 2015. 8. 13.

25류부터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 농산품에 대한 협상은 자국 농산품 보호 정책으로 인해 아직 미타결되었으나 협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음

- 2005년 미국, 이스라엘 등과도 대미무관세지역협정(Qualified Industrial Zone, QIZ)협정을 맺음으로써 미국으로 무관세 및 무쿼터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음¹⁹⁾
 - USTR은 이집트 내 3개의 QIZ(카이로, 알렉스, 수에즈)를 지정하였고, 2005년 12월 4번째 QIZ로서 중앙델타지역을 지정하였음
 - 이스라엘의 자재 일정 비율(10.5%) 이상 사용과 이집트 원재료 35%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의 FTA는 수산물, 농산물, 공산품을 포괄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경우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와 개별 양자 협정 방식으로 타결되었음²⁰⁾
 - 해당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이집트가 EFTA 국가들로 수출할 경우 농수산물을 제외한 공산품의 관세는 전면 철폐되고, EFTA가 이집트로 수출할 경우 2020년 1월 1일 까지 4개 품목군으로 분류되어 품목별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될 예정임

- 터키와의 FTA협상은 2007년 3월 1일 부로 발효되었으며 이로써 공산품의 대 터키 수출은 발효 즉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게 됨²¹⁾
 - 터키의 대 이집트 수출관세는 4개 품목군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됐음
 - 2008년에는 이집트 내에 터키 기업을 위한 특별산업지구가 설립되었으며 2011년 중반까지 약 200개의 터키 기업이 입주하여 운영 중임
 - 주요 수혜품목은 섬유, 의류, 자동차, 자동차 부품 분야임

19) KOTRA 카이로 무역관, 『KOTRA 국가정보: 이집트』, 2014. 6, pp. 63~66

20) 상동

21) 상동

〈표 I -11〉 이집트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

명칭	발효일	추진 현황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COMESA)	1994.12.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최초이자 최대의 경제공동시장(인구3.8억명) ○ 회원국: 동남아프리카 21개국(남아공은 옵저버) ○ 21개국 중 11개국은 상호 무관세
범아랍자유무역 협정(GAFTA)	1998.0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 아랍연맹 17개국(걸프 7개국과 별도 협정 체결) ○ 국가별 관세수와 및 면제대상 상이
EU-이집트 연합협정 (EU-EGYPT Association Agreement)	2004.06.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개 EU회원국과 이집트간 FTA ○ 이집트, 대EU 공산품 무관세 수출 ○ EU의 15개 회원국, 2019년까지 4개 품목군에 걸쳐 점진적 인하 및 철폐(예) 자동차 관세는 2010~2019년 매년 10%씩 인하 ○ 농산품 일부 쿼터 해제 및 관세인하 또는 철폐
QIZ 협약 (Protocol on Qualified Industrial Zone)	2005.0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 이스라엘, 미국 3국간 협약 ○ 이집트가 이스라엘 원부자재 10.5% 이상, 국내산 원부자재 35% 이상 사용 시 대미 무관세 수출 가능 ○ 이집트 내 QIZ 수혜기업은 500여개, 2011년 이집트 QIZ의 대미 수출액은 103억달러
Agadir 협정	2006.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모로코 ○ 농산물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 철폐 ※ EMFTA내에서 남남협력을 통해 EMFTA 통합을 가속화하는 장치로 간주, EU로부터 수혜
이집트-터키 FTA	2007.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터키 수출: 협정발효 즉시 무관세 ○ 대이집트 수출: EU-이집트 FTA에 준해 4개 품목군에 따라 2020년까지 점진적 관세 인하 및 철폐
이집트-EFTA FTA	2007. 8.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FTA: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 대EFTA 수출: 16개 품목을 제외하고 발효 즉시 관세철폐 ○ 대이집트 수출: 2020년까지 4개 품목군에 따라 점진적 인하 및 관세 철폐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14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중동』, 2014. 12, p.413 인용하여 작성

II.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5』

-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2004년부터 매년 ‘사업하기 좋은 나라(Ease of doing business)’ 순위를 다양한 부문에 걸쳐 조사하여 「Doing Business」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 2015년에 발간된 보고서에는 세계은행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189개국에 대하여 부문별로 조사·평가한 내용이 수록됨²²⁾
 - 「Doing Business 2015」 보고서상 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된 분야는 사업 개시(Starting a business), 건설 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 전력 수신(Getting electricity), 재산권 등록(Registering property), 신용 취득(Getting credit),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세금 납부(Paying taxes),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계약 이행(Enforcing contract) 및 청산(Resolving Insolvency) 등 10개의 지표임
 - ‘종합적인 사업의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부문에서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4위에 올랐음²³⁾
- 「Doing Business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이집트는 ‘종합적인 사업의 용이성’ 부문에서 전체 조사국인 189개국 중 112위에 올랐음
 - 지난 해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14』와 비교하면 ‘종합적인 사업의 용이성’ 순

22)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Economy Profile: Egypt, Arab Rep.*, 2014.

23)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Economy Rankings”, <http://www.doingbusiness.org/rankings/>, 검색일자 2015. 8. 13.

위는 1순위 상승하였고,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분야 순위 역시 2순위 상승하였음

○ 눈에 띄게 상승한 지표는 '투자자 보호' 부문으로 153위에서 135위로 18단계 상승함

□ '무역의 용이성(the Ease of Trading Across Borders)' 지표는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의 개수와 수출입 소요 일수 및 소요 비용 등을 산출하여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필요서류가 적고 수출입 소요 기일이 짧을수록 더욱 높은 순위에 오르는 방식으로 평가함²⁴⁾

○ 수출입서류는 통관절차에 관련된 대금지급, 통관, 항만 및 터미널 이용 및 운송 관련서류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기관, 관세청, 항만청 등의 기관에서 요구하는 통관서류를 포함함

– 이집트에서는 신용장 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의 매입 관련 서류를 고려했으며, 오직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해서만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수출자는 항상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은 산정함

○ 신고서식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내륙운송, 통관, 물품검사, 항만과 터미널에서의 작업시간을 산정하고, 해상운송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통관서류 발급비용, 세관수수료, 통관, 물품검사 비용, 통관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하되, 관세, 기타 세금과 해상운송비는 포함하지 않음

□ 이 분야에서 이집트는 92위를 차지한 중동과 북아프리카(Middle East & North Africa) 지역²⁵⁾의 평균보다 하위인 99위를 차지하였음

○ 같은 분야에서 중국은 98위를, 우리나라는 5위를 차지함

□ 해상 수출 비용은 컨테이너당 약 625달러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출에 필요한 서류는

24) 이집트의 주요 수출입품목 가운데 보관이나 통관에 있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일반화물을 20피트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경우로 가정하여, 통관대행업자, 물류업자, 선사, 항만공무원 및 은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과 구비서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함

25) 이 보고서상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는 이집트를 포함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모로코, 리비아, 레바논, 쿠웨이트, 이라크, 요르단, 이란, 알제리, 바레인 등 20개국이 포함됨

8가지이고, 서류 준비, 수출 통관, 국내 운송, 항만 등으로 수출에 총 12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수출 시 필요서류: 선하증권(Bill of Lading),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신고서(Customs export declaration), 통관증명서(Customs procedural certificate), 수출통계서식(Export statistical form), 기술기준통합증명서(Technical standards certificate)

□ 해상 수입 비용은 컨테이너당 약 790달러로 조사되었으며, 수입에 필요한 서류는 10가지이고, 서류 준비, 수입 통관, 국내 운송, 항만 업무 등으로 수입에 총 15일이 소요됨

- 수입 시 필요서류: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역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수입신고서(Customs import declaration), 통관증명서, 관세납부신청서 및 영수증(Customs Payment Application and Receipt), Delivery Order(인도지시서), 은행거래서(Form of Annex 4-imports for trading or production purposes)

〈표 II-1〉 이집트의 무역분야 순위 비교

구분	이집트	중동&북아프리카	OECD	중국	한국
수출 필요서류(개수)	8	6	4	8	3
수출 소요 시간(일)	12	19.4	10.5	21	8
수출 소요 비용(달러/컨테이너)	625	1,166.3	1,080.3	620	670
수입 필요서류(개수)	10	8	4	5	3
수입 소요 시간(일)	15	23.8	9.6	24	7
수입 소요 비용(달러/컨테이너)	790	1,307	1,100.4	615	695
무역 분야 순위	99	92	-	98	5

출처: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Economy Profile :Egypt, Arab Rep.*, 2014, p. 14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근거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임²⁶⁾
 - 이 보고서는 미국 업계의 의견,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의 보고서 그리고 관련 정부 부처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됨
 - 2014년 보고서는 미국의 58개 주요 교역국 및 경제권의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음²⁷⁾

가. 기술장벽, 위생 및 검역조치

- 2010년 이집트는 자동차에 대하여 유럽표준에 근거한 배출과 안전 기준을 도입하기로 공표하고 세 단계에 걸쳐 수입 차량과 국내생산 차량에 모두 적용하기로 함
 - 1단계의 진행 상황을 검토해보면, 결과적으로 EU 표준을 적용하지 않는 미국산 차량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남
 - 2단계와 3단계가 진행될지는 아직 불명확함

- 이집트 정부가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료주의적 장벽이나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나, 여전히 위생 및 검역 분야에 있어서는 좀 더 과학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함
 - 이집트는 2014년 6월 동물성 성장촉진제에 대한 품종관리 표준을 수립하고 WTO에 이를 보고하였는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이집트의 품종관리 표준에 대해 과학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26)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reports-and-publications/2014-NTE-Report>, 검색일자 2015. 4. 13.

27) 2010년부터 SPS(동식물 위생 및 검역) 및 TBT(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와 별도로 발표하고 있음

- 이집트는 미국산 소의 간에 대한 최대 수출시장이자 소고기 및 소고기 가공제품의 일곱 번째 수출국이기 때문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또한 이집트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기업이나 수입물품에 대한 표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기도 하는데, 옥수수, 대두 및 보리에서 발견될 수 있는 유해식물 성분 검사를 수입물품에만 시행하고 있음

나. 수입 정책

- 이집트는 2013년 비필수품목과 수산물 등에 취한 관세인상 조치 이후 여전히 고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 선글라스, 땅콩, 포도, 비디오 게임, 시계 등 100여개 품목을 비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산물, 견과일 등을 포함한 물품들에 대해 5~30%의 관세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인상함
- 2004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관세당국의 조직개편을 실시한 이래로 관세행정의 현대화를 추구하며 신기술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시스템은 2009년에 전면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정보공유의 단일화 의견이 상충하여 지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보기술 인프라시스템이 장애물로 고착화된 상태이며, 수입항에 도착하는 화물의 사전정보를 처리할 만한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
- 2008년 통관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새 관세법 초안을 마련하였으나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는 않아 시행 여부는 불확실함
- 이집트로 수출하는 물품의 구비서류에 대해 수출자로 하여금 영사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행정절차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서류 건별료 100달러 내지 150달러)이 소요되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다. 수입장벽

- 영양보조식품, 특선식품, 식품보충제 등에 대한 식품 허가와 관련하여 식약청 등 관련기관(국립영양연구소(National Nutrition Institute)과 국민보건부(the Ministry of Health and Population) 산하 의약정책센터(the Drug Planning and Policy Center)의 수입 허가 절차 개선이 필요함
 - 수입허가에 필요한 기간이 6주에서 8주 정도이며, 1년 내지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는데 이때 수입허가 건별로 USD 1,000달러를 납부하여야 함
 - 품목별로는 껍질째 수입되는 영양식품의 허가를 규제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며, 특선식품(specialty food)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이에 해당하는 비타민 또는 미네랄의 함량을 높인 가공식품의 통관에 혼선을 빚고 있음

- 또한 식품, 중고 및 재생 의료용품에 대해 국민보건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수입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고함
 - 수입자는 원산지 국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 국민보건부에 수입승인 신청을 하고 미국 식약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또는 유럽표준위원회(the European Bureau of Standards)의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원산지증명서 이외에도 장비가 신제품인지 중고품인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조일 등이 표시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의료장비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산지 국가에서 판매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함

라. 정부조달

- 이집트는 정부조달에 관한 WTO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이지만, 국내법에 의해 정부조달업체로 하여금 기술요소, 가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이집트 소재 업체로서 다른 업체 입찰가격의 15% 이내인 경우에 특혜가 주어짐
 - 상기 업체는 ‘the 2004 Small-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Development

Law(중소기업 개발법)’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부조달계약의 10%만을 공급하도록 공정성을 기하고 있음

- 정부조달업체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 반환기간을 단축시켜주는 등 특정 혜택을 제 공함

- 하지만, 특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특정 기관에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마. 지식재산권

- 이집트는 「2014 스페셜 301 보고서」상 감시대상국의 하나로, 공중파 TV 방송 미디어 콘 텐츠의 저작권 위반, 상표권 위반, 인쇄물, 온라인 제작물 및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함
- 상표권 관련 산업 성장의 장애요소로 상표등록 신청절차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 선하기 위해 미국 측에서 주관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Ⅲ. 이집트의 통관환경

1. 통관제도 개요

가. 통관 행정기관

1) 통관 행정조직

- 이집트의 통관, 관세징수, 수출입검사 등 수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관세청(Customs Authority),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 Trade) 산하 수출입감독청(General Organization for Export & Import Control),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산하 항만청(the Port Authority)과 공항청(the Airports Authority) 등이 있음²⁸⁾

- 이 가운데 수출입감독청은 산업통상부 산하기관²⁹⁾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감독, 산업제품의 시험, 인증 및 등록 업무, 기술표준의 검증과 평가 등을 관할함
 - 수입검사를 담당하기 위한 기관으로 1999년에 설립되어 현재 주요 항만과 공항에 11개의 수출검사기관과 수입검사를 위한 26개의 사무국과 실험실을 두고 있음
 - 수출입물품에 대해서 품질관리국의 표준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기술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표준을 새로이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기능을 담당

28) 이집트 행정부,
http://www.egypt.gov.eg/english/info/directory_specialization.aspx?gov=Economy, 검색일자 2015. 6. 13.

29) 산업통상부에는 투자정보, 통계 등의 각종 통상정보를 제공하는 이집트 통상진흥협회(Egyptian International Trade Point), 품질관리국(Egyptian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 수출진흥센터(Egyptian Export Promotion Center) 등 8개의 기관을 두고 있음

-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산하 항만청(the Port Authority)과 공항청(Airports Authority)에서는 수출입 물류 시스템을 관리하고 감독함

[그림 Ⅲ-1] 이집트 통관 행정조직



주: 교통부 소속 항만청은 알렉산드리아, 포트사이드, 홍해, 다미에타항 4개입
출처: 저자 작성

- 이집트는 1990년대 후반부터 수출입절차의 개혁에 착수하여 2003년부터 싱글윈도우 (the Single Window), 선적 전 통관(Pre-arrival Release), 공인수입자(Accounting Management Services, AMS)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세관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음³⁰⁾
 - 수출입서류의 서명 요건 효율화, 관세청과 다른 관계 당국 간의 업무 조정 등을 통해 통관절차의 중복과 복잡성을 줄여 수입통관 소요시간은 종전의 22일에서 2~6시간으로 단축시킨 것으로 보고됨
 - 2004년 관세율 개정(Nos. 300/2004, 410/2004)으로 평균관세율은 종전의 27%(2%, 5%, 12%, 22%, 32% 및 40% 등)에서 6%로 인하됨
 - 가공단계가 높을수록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 구조에 맞추기 위해 원재료, 반제품, 제품 간의 관세율을 조정하여 관세율 왜곡을 제거함
 - 관세 분야의 중재 및 분쟁 건수를 종전의 35%에서 1%로 낮춤

30) WTO, "Communication from Egypt-Reforming Customs Authority, Fighting Corruption, and the Use of Computers," TN/TF/W/69, October 2005.

- 이집트 관세당국이 도입한 주요 현대화 작업의 하나인 싱글윈도우 작업은, 2011년 후반에 산업통상부, 관세청, 항만청, 공항청 등이 주축이 되어 서류준비시간을 단축하고 전자통관처리시스템인 'TradeNet'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³¹⁾
 - 수출통관 소요시간과 수입통관 서류준비기간을 48시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목표 하에 진행 중임

2) 관세청(the Egyptian Customs Authority)

- 관세청은 재무부 산하 국세청(Tax Authority), 부동산세청(Real Estate Tax Authority)과 함께 세입청(Revenue Authorities)에 해당함³²⁾
- 이집트 관세청은 수출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징수에서 물품의 신속통관에 관한 행정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청과 기능이 유사함
 - 관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를 징수하고 세금 포탈을 감독함
 -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보세창고의 물품 관리, 통관 관련 허가·승인 등을 주관하는 식약청, 농림수산부, 문화부 등의 규제사항을 감독함
 - 밀수품, 마약 등의 국경관리, 관세영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전적 위험관리기술 도입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각 기능에 따라 크게 인사관리, 기획 및 법안, 세관운영, 기술부 및 관리부의 5개 부서로

31) ESCWA(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Key Factors in Establishing Single Windows for Handling Import/Export Procedures and Formalities: Trade Facilitation and the Single Window,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radfa_e/case_studies_e/escwa_e.pdf, November 2011, 검색일자 2015. 4. 3.

32) 이집트 재무부 조직도(2015년 7월 기준), <http://www.mof.gov.eg/MOFGallerySource/English/MOF%20Organizational%20Structure%202021-07-2015.pdf>, 검색일자 2015. 6. 13.

나누어 운영되며, 세관운영부에서는 지역별 세관을 나누어 관리함

- 전략기획 및 사업-ERP식 중앙집중 관리, 관세법 개정 및 행정 개발
- 대외협력-법률,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등
- 기술 분야-중앙관리 지원, 통계, 정보 및 통신기술의 중앙관리
- 보안, 재정 및 관리-중앙행정서비스, 금융서비스, 보안 등
- 인사관리-세관교육, 인적자원, 재정 및 관리
- 제도 및 통관절차-정책 및 절차, 국제협력, 관세평가, 중재, 감면 및 면제대상 관리
- 세관 운영-북서부 세관, 중앙 및 남부 세관, 동부세관

□ 관세청은 알렉산드리아, 카이로, 수에즈³³⁾ 등에 위치한 항구 및 공항의 지역별 세관과 자유무역지대(free zone)를 관리하고 있음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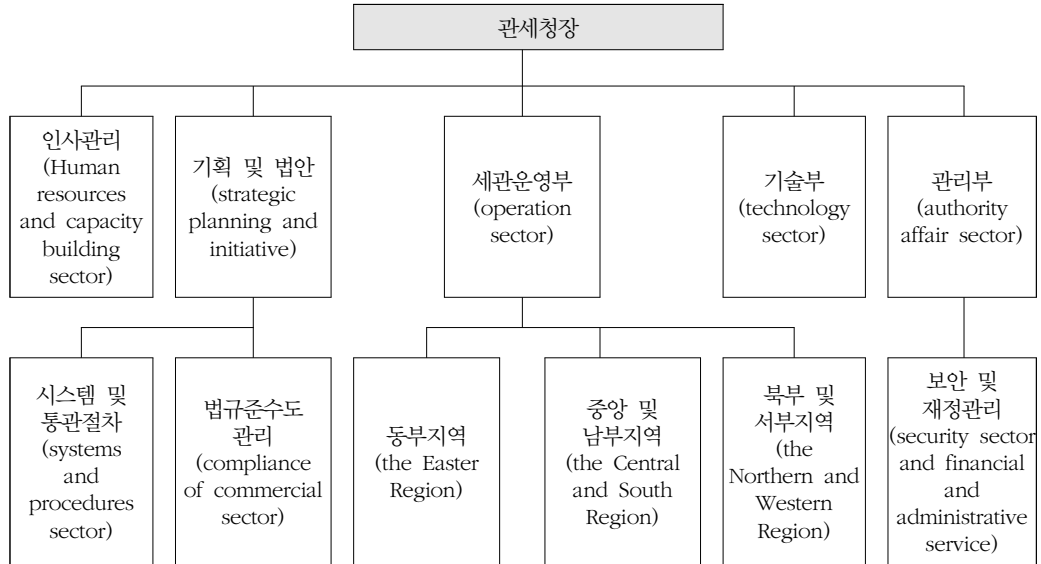
- 북서부 세관에서는 알렉산드리아세관과 자유무역지대를, 중앙 및 남부 세관에서는 카이로 국제공항세관, 카이로세관과 홍해 남부지역 세관을, 동부 세관에서는 수에즈세관과 다미에타세관을 관리함
 -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데킬라(Dekheila), 다미에타(Damietta), 포트사이드(Port Said), 수에즈항(Suez Port), 쇼크나(Sokhna Port) 등의 항구세관이 있음
 - 국제공항으로는 룩소르(Luxor), 카이로(Cairo),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아스완(Aswan), 마트루(Matrouh), 후루가다(Hurgada), 마르사알람(Marsa Allam), 엘토르(El-Tor) 등이 있음³⁵⁾

33) 전 세계 물동량의 10%와 원유 수송의 40%가 지나가는 수에즈 운하는 정치적, 경제적 보안이 요구되고 있어 군부에서 운영하고 있음

34) 이집트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eg/NewCustomSerives.aspx?Id=28>, 검색일자 2015. 6. 13.

35) 이집트 통상진흥협회 홈페이지, <http://www.tradeegypt.com/infoBank/egyptairports.asp>, 검색일자 2015. 6. 13.

[그림 Ⅲ-2] 이집트 관세청 조직도



출처: 이집트 관세청(<http://www.customs.gov.eg/>)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주요 항만

- 이집트 수출의 90% 이상이 해상운송에 의해 이루어지며, 전체 65개 항구의 대부분이 지중해와 홍해 부근에 위치함³⁶⁾
- 이집트 교통부 소속의 항만청은 알렉산드리아, 포트사이드, 홍해 동부와 서부 및 다미에타 다섯 곳에 위치하며, 항만별로 주로 처리하는 물품의 종류와 목적지를 달리함³⁷⁾
 - 다미에타와 포트사이드항은 전체 물량의 60~90% 이상을 환적화물이 차지함

36)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Doing Business in Egypt: 2015 Country Commercial Guide for U. S. Companies, <http://photos.state.gov/libraries/egypt/5/business/2015EgyptCCG.pdf>, January 2015, 검색일자 2015. 10. 12.

37)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Doing Business in Egypt 2014: Understanding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2013, pp. 41~44

- 알렉산드리아와 소크나 항은 지리적 위치상 수출입물류의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어 전체 무역량의 70% 이상을 처리하고 있음³⁸⁾
 - 알렉산드리아 항은 2013년에 3천만톤 이상의 물량을 처리하며 이집트 전체 무역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항만시설의 확장과 현대화를 도모하며 통관시간을 포함한 물품의 도착에서 반출까지 소요시간을 8~9일로 단축하였음

[그림 Ⅲ-3] 이집트 항만 분포



출처: 이집트 통관회사, http://www.rafimar.com/ports/index_ports.htm

- 특히, 소크나 항과 포트사이드 동부항만은 각각 2002년과 2004년에 설립되어 단기간에 주요 항구 중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대식 인프라시설을 기반으로 2011년에 50,000 TEU이상의 물량을 처리하였음³⁹⁾
- 5개 항만에서의 통관 처리 시간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항만별로 내륙운송료와 이 용료 등의 비용이 상이하여 비용 면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음⁴⁰⁾

38)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Doing Business in Egypt: 2015 Country Commercial Guide for U. S. Companies, <http://photos.state.gov/libraries/egypt/5/business/2015EgyptCCG.pdf>, January 2015, 검색일자 2015. 10. 12.

39)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Doing Business in Egypt: 2015 Country Commercial Guide for U. S. Companies, <http://photos.state.gov/libraries/egypt/5/business/2015EgyptCCG.pdf>, January 2015, 검색일자 2015. 10. 12.

40)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Doing Business in Egypt 2014:

- 공립항만과 사설항만 간의 항만·터미널 이용료의 차이가 큼⁴¹⁾
 - 포트사이드 동부와 소크나 항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내륙운송비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이집트는 항만시스템의 처리속도를 향상시키고자 수입자, 통관업자, 검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자적으로 통합, 연계하는 EDI 시스템을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역서비스업체의 낮은 생산성과 알렉산드리아, 데킬라 및 다미에타 등 3대 항구의 화물 적체(평균 21일)로 인한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음⁴²⁾

〈표 Ⅲ-1〉 이집트 항만별 통관 기간 및 비용

(단위: 일, 달러)

구분	알렉산드리아		다미에타		포트사이드 동부		포트사이드 서부		소크나(수에즈)	
	기간	비용	기간	비용	기간	비용	기간	비용	기간	비용
수출	11	615	10	585	11	694	11	532	12	667
서류 준비	7	125	7	125	7	125	7	125	7	125
내륙 운송	1	220	1	275	1	284	1	205	1	320
세관 통관	1	100	1	95	1	110	1	95	1	100
항만·터미널	2	170	1	90	2	175	2	107	3	122
수입	14	780	14	857	15	884	14	831	16	1,047
서류 준비	8	210	8	210	8	210	8	210	8	210
내륙 운송	1	220	1	275	1	284	1	205	1	295
세관 통관	2	100	3	100	4	90	3	90	4	90
항만·터미널	3	250	2	272	2	300	2	326	3	452

출처: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Doing Business in Egypt 2014: Understanding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2013, p. 111

Understanding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2013, pp. 41~44

41) 1998년 해상화물의 선적, 선박 수리, 컨테이너 처리 등의 하역관련 작업이 민간화된 이후 대부분의 항만은 자영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

42) ESCWA(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Key Factors in Establishing Single Windows for Handling Import/Export Procedures and Formalities: Trade Facilitation and the Single Window,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radfa_e/case_studies_e/escwa_e.pdf, November 2011, 검색일자 2015. 4. 3, p. 43

다. 관세 관계법령

- 이집트의 수출입 관계 주요 법령은 재무부에서 공포하는 관세법과 산업통상부의 대외무역법(the Import and Export Law)을 꼽을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수출촉진법(Export Promotion Law No. 155/2002), 반덤핑법(Anti-Dumping Law No. 161 of 1998) 등이 있음
- 이집트 관세법은 1963년에 제정(Customs Law No.66/1963)되어 2005년 세관의 통관절차 일원화, 통관절차의 전산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세 징수의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전면 개편을 단행함
 -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재수입되는 물품, 상업용 샘플 등에 대해 관세감면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
 - 1% 내지 4%의 범위에서 수입물품에 부과하던 서비스비용(service charge) 및 수입 부과금(import surcharge)은 GATT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를 철폐하기로 함
- 또한 수출세를 폐지하고, 관세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세율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 기존의 13,000개의 품목구조와 13단위의 HS코드에서 6,000여개의 품목구조와 WCO의 국제적 공통 분류체계인 6단위 위주의 HS코드 시스템으로 변경함
 - 평균관세율을 인하하고 경사관세구조에 따라 제조단계별 품목의 관세율을 조정함
 - 수출세를 폐지하였지만, 2008년부터 특정 물품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는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 중임
- 현재 이집트는 개정된 관세법(Law No. 95/2005) 및 시행령(재무부 Decree No. 10/2006)을 운영하고 있음
 - 세관의 권한, 통관절차, 일시수출입, 관세 면제, 수수료, 처벌 등 10개 부(section)로 구성됨

- 관세행정에 있어 관세법 다음으로 중요한 수출입관계법령인 수출입관리법(Import and Export Regulation Law No. 118/1975) 및 시행령(산업통상부 Decree No. 770/2005)에서는 수출입 규제, 물품 검사, 원산지증명 등을 규정함

2.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 이집트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는 관세와 판매세가 있으며, 이 밖에도 기타 물품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등이 존재함

가. 관세

- 관세의 과세가격은 WTO 협정에 따른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으로 함
- 이집트 세관당국은 관세금액 평가 시 송장에 기재된 CIF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송장가격보다 10~30%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음⁴³⁾
 - 이집트는 WTO 및 WCO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가격 산출 시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제9조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
- 관세율 조정은 일정 계획보다는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에 따라 품목별로 조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⁴⁴⁾
- 1995년 WTO에 가입한 이래 시장개방정책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 개방 폭을 확대하면서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관세율 인하정책을 단행하였음⁴⁵⁾

43)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14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중동』, 2014. 12, p. 378

44)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14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중동』, 2014. 12, p. 377

- 2004년 평균 관세율을 14.5%에서 2011년까지 5.5%로 인하한다는 계획하에 6,500개 품목의 관세를 평균 40% 인하하였음
 - 2007년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산업성장 촉진정책의 일환으로 1,00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정책을 취함
- 2013년 3월에는 자국 산업 보호 및 재정적자 완화를 위하여 186개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하는 등 관세인하정책은 불안정한 정치 및 경제상황으로 지연되고 있음⁴⁶⁾
- 연 10억파운드(1억 5,000만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100개의 비필수품목과 선글라스, 시계, 비디오게임기, 새우, 선박 등 비필수 소비재 및 사치품목에 대해 5~40%의 관세 인상을 취함

〈표 Ⅲ-2〉 관세개정안(2013년 3월 26일)

(단위: %)

품목	기존 관세율	새 관세율
냉동·비냉동 갑각류	5	20
조제 및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	20	40
조제 처리하지 않은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달팽이, 고등류)	20	20
불꽃 제품 - 신호용 조명탄, 레인로켓, 안개 신호용품	10	40
LED 조명	30	5
꽃, 산수목(장미, 카네이션, 백합, 난초)	30	40
탈각한 견과일류	5	10
생과일류 (멜론·파파야·수박·딸기류·키위류·살구·버찌·복숭아·자두)	5	10
사과·배 및 마르멜로	20	30
견과일(사과, 살구, 프룬)	5	10
대나무, 등나무 및 기타 식물성 충전재료	2	5
캐비어 및 캐비어 대용물	30	40
추잉껌 및 기타 설탕 과자	30	40

45) 상동

46) 김효근, KOTRA 카이로 무역관 해외투자진출 정보포털, “이집트 정부, 수입품목 관세율 대폭 개정”, http://www.ois.go.kr/portal/page?_pageid=93,721498&_dad=portal&_schema=PORTAL&p_deps1=info&p_deps2=&oid=1130417102822689928, 2013. 4, 검색일자 2015. 6. 13.

〈표 Ⅲ-2〉의 계속

(단위: %)

품목	기존 관세율	새 관세율
모터보트(아웃보트 모터보트 제외)	5	10
팔목시계, 회중시계 및 기타 휴대용시계	10	20
유희 용구, 테이블, 실내 게임 용구	30	40
셀프 복사지, 전사지	2	5
도포하지 않은 크래프트와 판지	10	5
삼륜오토바이	10	20
오토바이 부품(프레임, 포크, 휠립, 스포크, 허브, 프리휠, 스프로킷 휠, 브레이크 및 그 부품)	5	20

출처: 김효근, KOTRA 카이로 무역관 해외투자진출 정보포털, “이집트 정부, 수입품목 관세율 대폭 개정”, http://www.ois.go.kr/portal/page?_pageid=93,721498&_dad=portal&_schema=PORTAL&p_deps1=info&p_deps2=&oid=1130417102822689928, 2013. 4, 검색일자 2015. 6. 13.

- 이렇듯 지속적인 관세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류(30%), 자동차(0~135%), 주류 및 화장품(최고세율 3,000%) 등의 높은 관세율은 외국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주류에 대한 관세는 보호관세율의 성격이 있음
 - 수입담배 및 담배제품 등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순중량당 EGP 15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⁴⁷⁾

- 또한 관세율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관세행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⁴⁸⁾
 - 항구, 담당자마다 과세가격 결정, 품목분류 등의 관세행정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일부 세관의 경우는 규정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세율이 적용되기도 함

- WTO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이집트의 수입관세율 수준은 16.8%로, 농산물의 평균관세

47)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Doing Business in Egypt: 2015 Country Commercial Guide for U. S. Companies, <http://photos.state.gov/libraries/egypt/5/business/2015EgyptCCG.pdf>, January 2015, 검색일자 2015. 10. 12.

4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카이로 무역관, 『KOTRA 국가정보: 이집트』, 2014. 6, p. 93

율은 66.7%, 비농산물의 평균관세율은 9.3%로 나타남

○ 0.2%를 차지하는 비종가세 품목을 제외한 수치임

〈표 Ⅲ-3〉 2012년 이집트 관세율 수준

(단위: %)

구분	평균 관세율	면세비율
전체	16.8	-
농산물	66.7	68.7
비농산물	9.3	27.1

출처: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자료, 2014, http://stat.wto.org/CountryProfiles/EG_E.htm, 검색일자 2015. 4. 3.

농산물 가운데 약 68%가 면세를 적용받으며, 약 20%의 품목에 대해 5% 이하의 관세율이 적용되었음

○ 100%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도 1%가량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비농산물은 5~10%의 관세율과 25~50%의 관세율이 전체 품목의 20% 정도에 적용되어 비교적 비농산물의 관세율이 높은 국가에 속함

〈표 Ⅲ-4〉 2012년 수입가격 기준 농산물·비농산물의 관세 분포

(단위: %)

분포	면세	0≤5	5≤10	10≤15	15≤25	25≤50	50≤100	> 100
	관세품목 및 수입가격							
농산물								
양허관세	16	48.7	8.7	0.1	12.8	10.9	0.3	2.4
실행관세	68.7	20.4	1.8	0.0	4.8	3.2	0.0	1.0
비농산물								
양허관세	10.2	51.5	20.2	0	3.0	14.9	0	0.1
실행관세	27.1	48.8	11.9	0	1.9	10.2	0	0.1

출처: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자료, 2014, http://stat.wto.org/CountryProfiles/EG_E.htm, 검색일자 2015. 4. 3.

- 음료 및 담배의 평균 관세율은 843.7%로 가장 높은 실행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의류에 대해 28.8%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동물성 생산품 15.6%, 곡물 및 곡물조제품 15.3%, 이송장비 13% 등의 세율을 적용 중임

〈표 Ⅲ-5〉 이집트 수입 품목별 관세율

(단위: %)

품목	WTO 양허세율			실행세율		
	평균	면세비율	상한	평균	면세비율	상한
동물성 생산품	44.2	0	80	15.6	21.5	30
유제품	23.3	0	60	6.0	31.0	20
과일, 채소, 식물	37.8	0	80	8.9	5.4	30
커피, 차	36.9	0	60	10.5	20.8	30
곡물 및 곡물조제품	42.3	0	>1000	15.3	16.6	>1000
종유, 지방 및 유지	19.9	0	60	3.7	28.8	30
당류와 설탕과자	37.5	0	60	9.7	0	30
음료 및 담배	966.7	0	>1000	843.7	0	>1000
면	5.0	0	5	4.0	20.0	5
기타 농산물	19.3	0	60	2.4	24.6	30
어류 및 어류제품	24.8	0	60	5.4	31.0	30
광물 및 금속	31.1	0.1	60	7.9	8.3	30
석유	20.0	0	20	2.8	20.0	5
화학제품	18.9	0	80	5.7	9.2	>1000
목재, 지류 등	36.5	0	60	11.4	6.2	30
직물	27.7	0	60	10.9	3.9	30
의류	40.0	0	40	28.8	0	30
가죽제품, 신발류 등	41.7	0	60	12.2	1.3	30
기계류	18.1	6.0	80	4.9	21.7	30
전자기기	26.9	19.6	60	7.9	22.0	30
이송장비	35.4	0	160	13.0	5.6	135
기타 제품	31.2	4.8	70	11.7	9.8	30

출처: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자료, 2014, http://stat.wto.org/CountryProfiles/EG_E.htm, 검색일자 2015. 4. 3.

- 2009년 개편된 이집트의 현행 관세율은 재무부 웹사이트⁴⁹⁾에서 조회가 가능함

[그림 Ⅲ-4] 이집트 관세율 조회 화면과 관세율표 예시

HS code	Description	Rate(%)
1516.2010	Cocoa butter substitutes	Free
1804.00	Cocoa butter, fat and oil.	2
1805.00	Cocoa powde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2
2402.9	- Other:	
2402.9010	-Cigarettes	100 L,E/k,n
2402.9020	--- Other	150 L,E/k,n
2701.12	Bituminous coal	Free
2709.00	Petroleum oils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crude,	Free

출처: 이집트 재무부, <http://www.mof.gov.eg/mofgallerysource/English/New-Tariff/Customs.htm>, 검색일자 2015. 6. 13.

나. 판매세(General Sales Taxes)

- 이집트의 판매세(the General Sales Taxes)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매세법(the Sales Tax Law No. 11/1991)에 따라 물품과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됨⁵⁰⁾
 - 1991년 도입하여 수입업체, 도매 및 제조업체에 대해 부과해왔으며, 2001년 7월부터는 소매업 및 서비스업 분야에도 확대 적용함
 - 연매출 EGP 54,000를 초과하는 제조, 서비스, 수출입업체와 연매출 EGP 150,000를 초과하는 도매 및 소매기업에 부과함
- 판매세의 표준세율은 10%로⁵¹⁾, 품목에 따라 최저 1.2%에서 최고 45%의 범위에서 부과

49) 이집트 재무부, <http://www.mof.gov.eg/mofgallerysource/English/New-Tariff/Customs.htm>, 검색일자 2015. 6. 13.

5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카이로 무역관, 『KOTRA 국가정보: 이집트』, 2014. 6, p. 75

51) 이집트 판매세법(the General Sales Tax Law) 제3조

됨⁵²⁾

- 물품에 부과되는 세율은 10~50%,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5~10%, 사치품에 대해서는 25~30%의 세율을 적용함
 - 텔레비전, 라디오, 보석류, 화장품, 비디오 카메라 및 고가의 차량 등이 사치품으로 적용대상이 되어왔으며, 2015년 현재는 12피트가 넘는 냉장고, 에어컨디셔너와 비디오를 대상으로 하여 25%를 부과하고 있음
- 승용차의 경우 1,600cc 이하에 대해 15%, 1,600cc~2,000cc의 차량에 대해서는 30%, 2,000cc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45%를 부과하여 수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판매세는 CIF 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이집트 정부는 지속적으로 판매세율을 인상해왔으며, 이에 대한 조세형평성 시비가 있어 현재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⁵³⁾

- 2014년 대통령령 제58호에 의해 담배 50%, 맥주 200%, 알코올 음료에 대해 150%로 세율을 인상한 바 있음
- WTO 등 국제기구의 압력으로 관세는 인하하였으나 판매세율을 인상하여 수입업자 및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다. 기타 수수료

관세법 제111조에 따라 세관 감독하에 검사장, 보세구역 등에 장치되는 물품들은 세관에서 제공하는 물품 보관, 검사 등에 필요한 서비스에 지불하는 비용 성격인 서비스 비용(service charge)을 납부하여야 함

52) Ernst and Young,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15, April 2015, [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Worldwide-VAT-GST-and-sales-tax-guide-2015/\\$FILE/Worldwide%20VAT,%20GST%20and%20Sales%20Tax%20Guide%202015.pdf](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Worldwide-VAT-GST-and-sales-tax-guide-2015/$FILE/Worldwide%20VAT,%20GST%20and%20Sales%20Tax%20Guide%202015.pdf), pp. 266~271, 검색일자 2015. 5.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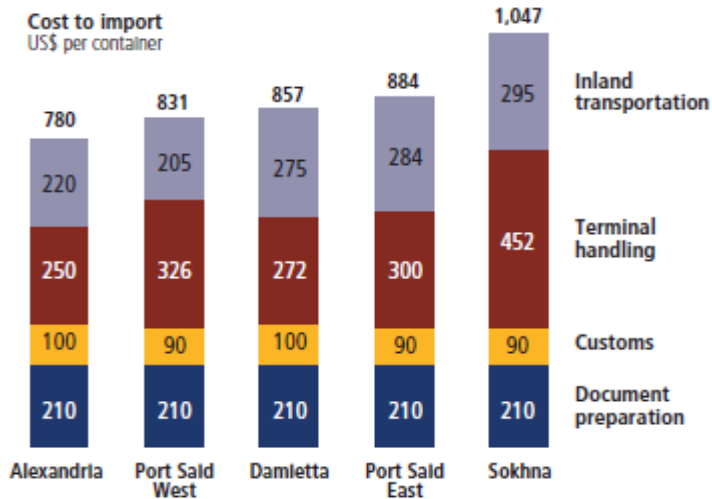
5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카이로 무역관, 『KOTRA 국가정보: 이집트』, 2014. 6, p. 93

- 자유무역지대에 보관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대의 장치수수료를 납부함
 - 개별 서비스에 대한 비용 또는 요율의 변경, 면제, 감면 여부는 재무부에서 결정하며, 투자법에서 정하는 세금의 면제 또는 환급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함
- 또한 수입관리대상 품목의 위생, 검역 등에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수출입관리법 시행령 부속서에 규정된 검사비용(inspection fee)이 부과됨
- 한편, 항만 또는 터미널마다 작업 설비의 배치와 물류처리절차가 상이하여 항만이용료 또는 터미널 이용료(port charge or terminal charge)와 내륙운송료(inland transportation fee)가 달라지는데, 항만이용료는 공립항만의 경우 사립항만보다 26%까지 낮은 요율이 적용되기도 함⁵⁴⁾
- 이는 공립으로 운영되는 항만과 터미널의 경우 재무부령에서 정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임
 - 공공터미널의 경우 제조업을 운영하는 이집트 수출업자에게는 50%까지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법규에 정하고 있음
 - 통관비용 가운데 서류준비와 세관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항만별로 유사하나, 내륙운송비와 터미널 이용료는 30% 이상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선사에서는 항만당국에서 정하는 요율에 근거하여 별도의 요금을 정하여 부과하고 있음⁵⁵⁾
- 다미에타와 알렉산드리아 항과 같은 일부 항만당국의 경우에만 이용료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나, 다른 항만의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합의된 요율을 일방적으로 적용함

54)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Doing Business in Egypt 2014: Understanding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2013, pp. 41~44.

55) 상동

[그림 Ⅲ-5] 항만별 수입통관 비용 비교(2014년)



출처: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Doing Business in Egypt 2014: Understanding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2013, p. 43.

3. 통관절차

가. 수입통관 절차

- 이집트 수입통관 절차는 ① 무역업자 등록 → ② 수입허가 취득 및 기타 행정처리 → ③ 수입신고 → ④ 물품검사 → ⑤ 세금 납부 → ⑥ 물품 반출 순서로 이루어짐⁵⁶⁾
 - 물품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화물에 대해서는 세금 및 관련 비용을 선납 후 물품검사를 시행함

- 수입자는 화물도착 전까지 수입신고의 절차를 밟아야 함
 - 수입신고서 등 제반 서류는 수입자 또는 통관업무를 대리하는 이집트 국가공인 통관 대행업체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통관 대행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짐

56) 이집트 관세법

- 이집트 관세청은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세관 현대화의 일환으로 '선적 전 통관 (pre-shipment release)'제도를 구축하고 있는데, 아직 관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⁵⁷⁾
 - 무역업자들은 선박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의 전자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물품의 신속 통관을 도모하고자 추진되고 있음
 - 이 절차를 통해 통관되는 경우에는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포장명세서의 제출 또한 필수적으로 요구됨

- 수입신고에 필요한 기본서류는 크게 선적서류, 물품 관련 서류, 수입허가와 관련된 서류로 나눌 수 있음⁵⁸⁾
 - 선적관련 서류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과 운송허가증이 있으며, 수입물품 관련 서류는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거친 원산지증명서 3부, 상업송장(원본) 3부, 포장명세서 1부 등이 있음
 - 이밖에도 수입허가와 관련하여 수입물품이 식품, 화학물질, 의약품 등인 경우에 수출국의 관련 기관이 발급한 성분검사증, 수입허가서, 수입자 사업등록증, L/C 사본 등을 구비하여야 함

- 수입자 또는 통관 대행업자가 수입신고서 및 제반 서류를 전산으로 통관시스템에 제출한 후, 세관에서 이를 접수하면 수입자에게 신고서 접수확인증이 발급됨⁵⁹⁾

- 세관에서는 신고서류를 심사하여 물품반출 채널을 녹색, 황색과 적색 등 세 개의 채널로 나누어 선별하고 세관 검사장에서 물품검사를 실시함
 - 관세청 위험관리국(the General Directorate for Risk Management)이 물품검사 소관부서이나,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수작업으로 물품반출 채널을 결정함

57)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Doing Business in Egypt 2014: Understanding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2013, pp. 41~44.

5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카이로 무역관, 『KOTRA 국가정보: 이집트』, 2014. 6, pp. 102~103

59) 상동

- 일반적인 화물은 녹색채널을 통해 통관절차가 진행되며, 신고 내용이 부족한 경우 황색으로, 통관관계 법규를 위반하거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등에는 적색채널로 분류하여 물품검사를 거치게 됨⁶⁰⁾

- 녹색채널로 분류된 화물은 세관에서 확정한 관세 및 제세액을 납부하면, 세관에서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며 이를 세관에 제시하고 물품을 인수함
 - 황색채널로 분류된 경우 신고인에게 서류가 반송되어 미비서류를 구비하도록 하며, 적색채널로 분류된 경우 검사가 통과된 경우에 한하여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나. 수출통관 절차

- 수입통관과 마찬가지로 무역업자 등록을 해야만 수출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⁶¹⁾

- 수출자 또는 통관 대행업자는 수출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이집트 관세청의 통관 시스템에 제출함
 - 수출신고 필요서류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적하목록, 각종 허가·등록증 등임

- 수출신고가 접수되면 물품은 3가지 채널로 분류되어 검사 및 심사의 단계를 거치게 됨
 - 녹색: 자동 수리됨
 - 황색: 관련서류 제출 후 수리됨
 - 적색: 관련서류 제출 및 물품검사 후 수리됨

- 모든 심사가 끝나면, 통관이 완료되어 물품을 수출함

60) 2011년부터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사대상(적색)과 비검사대상(녹색)으로 나누어 통관절차의 신속화를 추진했으나, 2011년 시민혁명 이후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수입물품에 대한 적색채널 비중이 높아졌음

61) 이집트 관세법

4. 수출입규제

가. 수입규제 및 수출제한

1) 수입규제 대상품목

- 이집트는 1986년 7월 210개의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한 이래 수입금지 품목을 계속 축소 하면서 관세율 인하와 함께 수입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⁶²⁾
- 수출입관리법(Import and Export Law No.118/1975) 부속서 1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입 규제 및 관리품목에 따라 가금류 등 아래 8개 품목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⁶³⁾
 - 이슬람교에 반하는 디자인이나 상표가 부착된 제품
 - 닭고기 내장 및 다리
 - 가금류 내장
 - 오일 분사 펌프를 장착하지 않은 2행정 모터바이크
 - 모든 종류의 석면
 - 석면으로 제작된 브레이크 패드
 - 유전자 조작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참치
 - DDT 등 127개 종류의 화학제(농업용 살충제 및 살균제는 농업부의 허가를 받은 후 수입 가능, 수입금지 살충제 및 화학제 내역은 별도 리스트로 관리)
- 중고제품은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지되나, 수출입관리법에서 정하는 총 13개 품목군은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이 가능함(수출입관리법 시행령 부속서 2)
 - 품목군별로 해당 기관의 허가가 요구되거나 특정 용도나 구매자를 제한하고 있음
 - 각 유관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군: 무기류, 항공기 및 부품, 어업용 선박, 합성 플

6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카이로 무역관, 『KOTRA 국가정보: 이집트』, 2014. 6, pp. 79~80

63) 이집트 수출입감독청, 수입금지품목
http://www.goeic.gov.eg/en/Goods_suspended_from_importation.pdf, 검색일자 2015. 8. 13.

라스틱 폐기물과 스크랩, 자유무역지대 반입용 자재 및 제품, 폐지 및 폐잡지, 예술 품 등

〈표 Ⅲ-6〉 수입이 가능한 중고제품

연번	품목	요건
1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기타 부분품	1. 가정용품과 그 부분품은 제외 2. 컴퓨터 세트와 부속품은 생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해서는 안됨 3. 국민보건부의 해당 요건 승인(의료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기계류 등) 4. 생산과정에서 오존 고갈물질의 사용 금지
2	운송수단 및 그들의 부분품(모터사이클 제외)	1. 수입이 허용되는 부분품: 문, 엔진, 기어박스, 차체(샤시 제외), 댐퍼, 림, 대쉬보드, 스프링 2.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은 생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해서는 안됨 3. 승객 또는 물품 운송용 차량은 최대중량이 9톤 이하여야 함
3	기계, 장비 및 스포츠용품	해당사항 없음
4	컨테이너	해당사항 없음
5	무기류	국방부(the Ministry of the Interior) 승인
6	항공기 타이어 및 내부 튜브	이집트 항공회사로부터 구매하여야 함
7	철로를 포함한 철 스크랩	중고차량의 부분품 제외 철로는 통관되기 전에 수거되어야 함 수출국 소재 정부기관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8	플라스틱의 웨이스트, 페어링 및 스크랩	환경보건국(the Head of Environment Affairs Agency)의 승인
9	자유무역지대에서의 프로젝트에 사용된 잔재물	투자청(the Head of Executive Council of the General Investment Authority)의 승인
10	중고책, 신문에 사용된 종이류	정보관리부(the Ministry of Information) 산하 유관기관의 승인
11	직물제로 만들어진 끈, 로프, 케이블 등	산업관리청(the Industrial Control Authority)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될 수 있음 허가된 공장에서만 수입 가능 수출입감독청의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함
12	예술품, 골동품	문화부(the Ministry of Culture)의 승인
13	철강제품, 기구, 금속 또는 목조로 된 기둥, 비계목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집트 기업 또는 해외지사로부터 수입되어야 함

출처: 수출입관리법 시행령 부속서2

- 승용차, 차량용 부품, 원유제품과 의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 등은 수출입관리법 부속서3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표 Ⅲ-7〉 요건 확인대상 수입물품

연번	품목	수입요건
1	승용차	1. 선적 및 L/C 발행은 신차년도에 완료되어야 하며, 해당 차량은 사용되지 않아야 함 2. 해당 차량의 유형과 모델이 이집트 및 중동국가의 기후에 적절함을 통관 시 제출하는 서류로 입증하여야 하며, 수출국의 제조자증명서도 첨부하여야 함
2	차체를 제외한 자동차 부품, 의류, 카페트, 신발, 가방, 플라스틱, 목조, 유리, 금속으로 된 소비재 가정용의 기계 및 장비류 안경, 시계	1. 원산지 국가에서 선적 또는 제조자 또는 지사 또는 대리점의 본사가 원산지국가, 아닌 경우 이를 입증 또는 트레이드마크를 소유한 기업이 선적하여야 함 2. 섬유제품과 관련해서는, 제조자, 원산지, 직물 유형, 혼합된 성분 비율 및 수입자 이름이 직물 표면에 표시되어야 함(관세율표 제58류, 인조 밉크, 암막커튼 등은 제외)
3	원유제품: 부탄 벤젠, 가솔린, 디젤, 윤활유 등	원유관리국(the Egyptian General Organization for Petroleum)의 승인
4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장비, 용품 등	생산과정에서 오존파괴물질의 사용 금지

출처: 수출입관리법 시행령 부속서3

- 수출입관리법 부속서 8에서는 품질관리대상 수입품목의 HS코드와 검사수수료를 명시하고 있는데, 잉크, 비누, 시멘트, 바니쉬, 페인트 등 101개 품목이 여기에 해당함⁶⁴⁾
- 산업통상부령 No. 32/2006에 따라 수출입관리법상 규제대상 품목이 개정되었으며, 2009년(산업통상부령 No. 169/2009)에 유연제, 가방, 지갑, 기저귀 등 위생용품, 철강제 튜브, 파이프, 주방용품 등이 추가되었음

64) 이집트 수출입감독청,

http://www.goeic.gov.eg/en/Goods_subject%20to_Imports%20Quality_Control_and_their_Inspection_Fees.pdf, 검색일자 2015. 8. 13.

2)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 이집트 국민보건부(Ministry of Health)에서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비타민, 영양보충제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령이 개정되고 있어 향후 완제품 형태의 종합비타민의 수입이 가능하게 될 수 있음⁶⁵⁾
 - 비타민, 영양보충제 등 건강보조식품은 허가를 받은 국내 제조자들에게만 제조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부의 품질관리 표준에 따라 포장되고 혼합된 형태의 재료를 보내 이집트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만 판매가 가능함

- 모든 영양보조제와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민보건부 산하 식품 및 국립영양연구소와 의약정책센터(the Drug Planning and Policy Center)에 해당 물품의 등록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집트 국내 시장에 유사한 식품이 존재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등록이 거부될 수 있음⁶⁶⁾
 - 승인을 받기까지 4개월에서 1년이 소요됨
 - 식품허가의 유효기간은 품목에 따라 1년 내지 5년이며, 허가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수입자는 수입허가를 새로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수수료로 약 USD 500를 납부하여야함

- 수입금지품목이었던 수입의류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는 수입을 허용하되 특별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부터 WTO 협정에 따라 종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⁶⁷⁾

65)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Doing Business in Egypt: 2015 Country Commercial Guide for U. S. Companies, <http://photos.state.gov/libraries/egypt/5/business/2015EgyptCCG.pdf>, January 2015, 검색일자 2015. 10. 12.

66)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Doing Business in Egypt: 2015 Country Commercial Guide for U. S. Companies, <http://photos.state.gov/libraries/egypt/5/business/2015EgyptCCG.pdf>, January 2015, 검색일자 2015. 10. 12., 중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People's Republic of China, MOFCOM), Foreign Market Access Report 2010: Arab Republic of Egypt, <http://images.mofcom.gov.cn/trb/accessory/201004/1271301827242.pdf>, 2010, 검색일자 2015. 8. 13.

- 원칙적으로 중고승용차의 수입을 금지하고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될 것을 규정하고 있음⁶⁸⁾
 - 외국투자자에게는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인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를 적용해주고 있는데, 자유무역지대 관리기관(the Chairman of the General Authority for Investments and Free Zones)의 승인을 얻어야함

- 이집트 국민보건부에서는 중고 또는 반품된 의료장비·의료기기, 컴퓨터로 처리되는 영상장비와 대부분의 전산장비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수입통관 절차를 요구하고 있음⁶⁹⁾
 - 현재는 중고물품뿐만 아니라 신제품 혹은 기증된 의료장비에 대해서도 이러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음

- 상기의 장비를 이집트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제조국 또는 원산지 국가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과 유지 보수의 적정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중고품의 사용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 의료장비수입허가신청서, 제품 안전성을 입증하는 내용의 해당 물품 수출국의 보건 당국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중고품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임을, 신품의 경우 해당 제조일을 명시하는 증명서 원본, 미국 식약청(FDA) 또는 유럽표준위원회(the European Bureau of Standards)의 인증서, 부품 또는 수리 등 유지보수가 가능한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7) 이집트 수출입감독청,

http://www.goeic.gov.eg/en/Goods_subject%20to_Imports%20Quality_Control_and_their_Inspection_Fees.pdf, 검색일자 2015. 8. 13.

68) Embassy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Doing Business in Egypt: 2010 Guideline for Netherlands Companies,

http://egypt.nlembassy.org/binaries/content/assets/postenweb/e/egypte/netherlands-embassy-in-cairo/import/products_and_services/guidelines-for-doing-business-in-egypt, August 2010, 검색일자 2015. 8. 13.

69)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Doing Business in Egypt: 2015 Country Commercial Guide for U. S. Companies,

<http://photos.state.gov/libraries/egypt/5/business/2015EgyptCCG.pdf>, January 2015, 검색일자 2015. 10. 12, Embassy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Doing Business in Egypt: 2010 Guideline for Netherlands Companies, August 2010, p. 12

- 2012년 4월(Decree 626/2011)부터는 섬유제품, 가죽 및 가죽제품에 대해서 수출입감독청에서 지정한 국제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적합성 인증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⁷⁰⁾
 - 섬유제품: 의류, 직물류, 기성복, 카펫, 거실용 깔개, 가정용 직물
 - 가죽 및 인조가죽제품: 신발, 부속품, 가방
 - 단, 지갑, 벨트와 팔찌류는 제외함

- 상기 제품을 이집트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자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제품 브로셔, 견본송장, LC 사본 등을 제출하여 인증기관에 검사를 신청하고, 이집트와 국제 표준 규격을 충족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수출자는 선적서류와 함께 물품의 중량, 가격, 제조국가, 제조자, 수입자 및 수출자의 이름과 주소와 특허받은 트레이드마크 등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3) 수출제한

- 이집트는 국제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수급을 조정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쌀, 시멘트, 철강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 수출허가를 받고 수출세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는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음⁷¹⁾

- 수출입관리법 제7조 및 산업통상부령에 근거하여 쌀 수출자로 하여금 식품 보조금 명목으로 공급관리부(General Authority for Supply Commodities, 현재 the Ministry of Supply)에 일정 중량에 부과하는 수출세를 납부하고 수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함⁷²⁾

70) 이집트 정부대행검사기관 코테크나 홈페이지,

<http://www.cotecna.kr/ko-KR/Services/Government-Programs/Egypt>, 검색일자 2015. 11. 20.

71) 중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People's Republic of China, MOFCOM), Foreign Market Access Report 2010: Arab Republic of Egypt,

<http://images.mofcom.gov.cn/trb/accessory/201004/1271301827242.pdf>, 2010, 검색일자 2015. 8. 13.

72) Salah Mansour,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 Narrative: Egypt,

-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톤당 수출세를 EGP 300에서 EGP 1,000으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하다가, 2009년 4월 연장하면서 EGP 2,000(USD 357/톤)으로 다시 조정하였음⁷³⁾
- 2014년 9월부터는 백미(milled rice)에 대해서 수출하고자 하는 중량의 톤당 USD 261를 공급관리부에 납부하도록 함
 - 또한 수출하고자 하는 중량을 기준으로 톤당 USD 280를 수출허가 수수료로 납부 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출비용을 약 USD 480/MT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조치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2015년 10월 4일, 쌀(HS 코드 1006.30)에 대하여 같은 해 8월부터 시행하던 수입금지조치를 수출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하고 (Ministrial Decree No. 708), 톤당 EGP 2,000(USD 255)를 부과하고 있음⁷⁴⁾
 - 이 수출세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부과될 예정임

나.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관리제도

- 산업자원부 산하 품질관리국(Egyptian Organization for Standards and Quality Control, EOS⁷⁵⁾)에서는 다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인증표준과 기술 관련 규정을 수립하고 인증을 발행함
 - 품질관리국은 종전에 4개의 테스트 샘플 수집기관을 통합하여, 시험과 검사로 인한 수많은 샘플 채취로 인한 비용, 화물적체, 과도한 통관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No. 106/2000)에 의해 설립되었음⁷⁶⁾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2009.

73) EU Market Access Database,

http://madb.europa.eu/madb/barriers_details.htm?barrier_id=105326&version=4, 검색일자 2015. 11. 7.

74) Global Trade Alert,

<http://www.globaltradealert.org/measure/egypt-replacement-milled-rice-export-ban-through-export-duty>, 검색일자 2015. 11. 7.

75) 이집트는 공식적으로 1957년에 표준제도를 도입(Presidential Decree 29/1957)하고 품질관리국(the Egyptian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을 설립, 2005년에 현재의 EOS로 명칭을 변경함

76) 농수산물유통공사,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동 이머징 마켓 진출여건 (이집트 편)』, 2011. 6, p.73

- 수입물품에 대한 기술표준 적합성 평가는 수출입감독청(GOEIC)에서 총괄하지만, 물품에 필요한 검사의 종류에 따라 각 유관기관에 위임함
 - 예를 들어 수입물품이 농산물이면 성분검사를 수행하는 농림부 산하 검사기관으로 보내지며, 산업제품이라면 산업통상부에, 의약품인 경우 국민보건부, 수출입관리국 또는 기타 공인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함

1) 이집트 표준(the Egyptian Stand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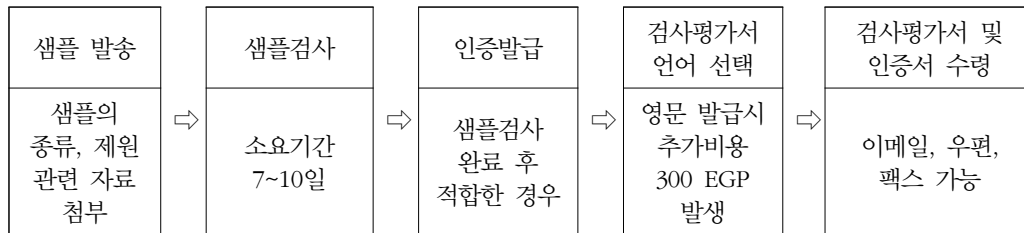
- 산업통상부령에 따라 특정 소비재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이집트 표준의 적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를 마쳐야 하며, 수입하는 때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함
- 시험 및 인증대상 품목에는 화학제품 및 건축자재, 엔지니어링 제품, 섬유제품, 식품 등 수출입관리법 부속서 8에 명시된 물품들이 포함되며, 이 검사를 받는다 해도 수입물품이 도착한 후 방사능검사 및 국민보건부에서 수행하는 여타의 검사를 받을 수도 있음
- 품질관리국에서는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품질관리대상 수입물품에 필요한 검사는 수출입관리청에서 주관함
 - 물품에 따라 전기에너지부(The Ministry of Energy and Electricity)의 방사능과, 보건부, 농림수산부의 수의과, 무역투자부 등 관련 부처에서 필요한 검사를 시행함
- 단 식품, 의료기기 등 특정 물품은 3~4개의 관련 부처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검사에 필요한 샘플을 별도로 채취함⁷⁷⁾
 - 샘플검사에는 통상 영업일 기준으로 7일 내지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며, 부적합 판

77) Salah Mansour,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 Narrative: Egypt,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2009,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Doing Business in Egypt: 2015 Country Commercial Guide for U. S. Companies, <http://photos.state.gov/libraries/egypt/5/business/2015EgyptCCG.pdf>, January 2015, 검색일자 2015. 10. 12.

정의 경우에는 비용의 25%만 납부함

- 상기 특정 물품이 아닌 일반 물품의 경우 검사기관, 수입신고인, 그리고 해당 세관에서 참조하기 위해 총 3개의 견본을 채취하며, 검사가 종료되면 수입신고인에게 되돌려줌
- 재무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수입자의 비용으로 해당 시험,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가 통지된 날로부터 해당 세관에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⁷⁸⁾
 - 이의제기에 대해 다시 실시된 분석결과는 최종으로 간주되며, 모든 검사결과는 1년간 유효함

[그림 Ⅲ-6] 이집트 수입물품 인증 절차



출처: KOTRA 카이로 무역관(2014), p.97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품질관리국의 인증

- 시험을 거쳐 기준에 부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국에서 이집트 적합성 마크(Egyptian Conformity Mark) 또는 이집트 품질마크⁷⁹⁾(Egyptian Quality mark)를 부여하고 있음

78) Salah Mansour,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 Narrative: Egypt,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2009, 미국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Doing Business in Egypt: 2015 Country Commercial Guide for U. S. Companies, <http://photos.state.gov/libraries/egypt/5/business/2015EgyptCCG.pdf>, January 2015, 검색일자 2015. 10. 12.

79) ISO/IEC Guide 28/1982에 명시된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음

- 이집트 적합성 마크는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물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임
- 이집트 품질마크는 제조자들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산업제품에 대해서 국내 제조업체들에게만 발급되는 인증(certification)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 사안에 따라 국제인증마크인 유럽의 CE마크, 또는 미국의 UL마크, FDA마크를 원용하고 있어 품목별로 요구하는 인증이 상이함. 국제규격인증을 통용하고 있어 품질관리국에서 아랍어 번역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도 함⁸⁰⁾

[그림 Ⅲ-7] 이집트 ECM 마크

제도명	Egyptian Standards & Egyptian Conformity	인증마크	
시험기관	이집트 품질관리국(EOS, Egyptian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Quality) 산하의 Chemical products and construction materials, Engineering, Textile, Food products Labs 부서		
인증기관	이집트 품질관리국		

출처: KOTRA 카이로 무역관(2014), p. 참고하여 작성

- 이집트는 8,500여개의 표준(the Egyptian Standards)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000개가 기술표준이며 543여개는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의무기준임⁸¹⁾
- 품질관리국에서는 의무기준 가운데 80%은 제네바 소재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8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집트 인증(CE마크 필수), <http://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menuId=MENU00291&maxIndex=9999999999999999&minIndex=9999999999999999&schType=0&schText=&categoryId=&upDown=0&boardStyle=&no1=0&linkId=125833>, 2013. 1. 29., 검색일자 2015. 11. 23.

81)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Doing Business in Egypt: 2015 Country Commercial Guide for U. S. Companies, <http://photos.state.gov/libraries/egypt/5/business/2015EgyptCCG.pdf>, January 2015, 검색일자 2015. 10. 12.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같은 국제기관의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대부분의 이집트 표준은 국민건강, 보안,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무기준(mandatory Egyptian Standard)은 전체 기술 표준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⁸²⁾

□ 또한 이집트 표준에 따른 인증을 획득할 수 있으나 국제 표준화기구의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른바 신흥국형 임의인증 절차를 취하고 있음⁸³⁾

- 재무부령(Ministerial Decree 180/1996)에 따라 수입물품에 적용할 수 있는 의무기준인 이집트 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7개의 국제표준 인증 시스템 가운데서 관련 표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ISO, European Standards, American Standards, Japanese Standards, British Standards, German Standards, 식품에 대해서는 Codex Standards

□ 하지만, 국제표준에 부합하고 국제인증마크를 부착한 수입물품뿐만 아니라 이집트 표준에 따른 ECM 마크를 부착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품질관리국의 시험과 검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⁸⁴⁾

□ 이밖에도 이집트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처리·가공된 식품에만 부여되는 인증 마크를 획득하도록 하는 할랄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⁸⁵⁾

82) 중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People's Republic of China, MOFCOM), Foreign Market Access Report 2010: Arab Republic of Egypt, <http://images.mofcom.gov.cn/trb/accessory/201004/1271301827242.pdf>, 2010, 검색일자 2015. 8. 13.

8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카이로 무역관, 『KOTRA 국가정보: 이집트』, 2014. 6, p. 94

84)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Doing Business in Egypt: 2015 Country Commercial Guide for U. S. Companies, <http://photos.state.gov/libraries/egypt/5/business/2015EgyptCCG.pdf>, January 2015, 검색일자 2015. 10. 12.

85) 농수산물유통공사,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동 이머징 마켓 진출여건(이집트 편)』, 2011. 6, p. 28

다. 품질표시(labeling)

- 수출입관리법에 따라 목재로 된 컨테이너는 해충이나 유해동물로부터 안전함을 입증하는 공식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상운송 시 컨테이너의 모든 공간을 사용해야 함
- 1994년(Ministerial Decree 396/1994) 이집트 정부는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서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적어도 절반 이상의 유통기한이 남아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유제품, 육류 및 육류가공품, 어류, 가금류 등은 품질관리국에서 규정하는 유통기한이 적용됨⁸⁶⁾
- 또한 식품이 아닌 주사기, 카테터(catheters)와 같은 의료용품에 대해서도 이러한 유통기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함
- 모든 수입식품은 식료품 표기규정과 포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물품의 보존, 항균 처리 및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포장이 요구됨
 - 특히 가금류 및 육류 제품은 원산지국가로부터 이집트로 직접 운송되어야 하며, 포장표면의 안과 밖에 아랍어로 표기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2006년부터 모든 수입식품에 아랍어와 영어를 병기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으며⁸⁷⁾, 라벨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⁸⁸⁾
 - 원산지, 수입상의 주소와 전화번호, 제조일자, 수출업자, 트레이드 마크 또는 상품명, 상품의 유형, 상품의 용도, 성분, 보관방법 및 보관온도, 순중량, 총중량(포장 갯수), 방부제가 포함된 경우 방부제 사용 비율 등
- 가금류 또는 육류제품의 경우 포장용기를 봉인하고, 라벨은 이슬람 종교의 할랄의식에 반

86) Embassy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Doing Business in Egypt: 2010 Guideline for Netherlands Companies*, August 2010, p.12

8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카이로 무역관, 『KOTRA 국가정보: 이집트』, 2014. 6, p.85

88) Salah Mansour,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 Narrative: Egypt*,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2009.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여 (“is slaughtered according to Islamic ritual” or “Halal”) 포장용기의 안과 밖에 모두 표기하여야 함⁸⁹⁾

- 육류식품에 표기되는 라벨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원산지, 생산자 이름과 로고, 도축장 이름, 도축일,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할랄인증(“Islamic slaughter”)을 받은 기관 이름

□ 상기의 식품표기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 국가에 소재하는 이집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 전기제품, 기계류 및 장비의 포장 겉면에는 품목별로 원산지를 지워지지 않게 표기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이랍어로 표기된 물품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부품별 디자인, 조립 및 작동방법, 수리 또는 정비 방법, 전기회로 상세설명 및 안전수칙

라. 반덤핑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

□ 반덤핑제재조치법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산하 반덤핑, 보조금 및 세이프가드국에서 조사 개시 여부의 판정, 심의 의결 등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규제를 담당함

□ 이집트의 반덤핑 제재조치는 주로 직물, 설탕, 제지, 철강산업 등의 분야에서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대상국은 EU, 브라질, 중국, 인도, 사우디, 리비아 등이 있음⁹⁰⁾

- 1998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이집트의 반덤핑 관세 총 발동 건수는 총 32건으로

89)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Doing Business in Egypt: 2015 Country Commercial Guide for U. S. Companies, <http://photos.state.gov/libraries/egypt/5/business/2015EgyptCCG.pdf>, January 2015, 검색일자 2015. 10. 12., Salah Mansour,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 Narrative: Egypt,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2009.

9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카이로 무역관, 『KOTRA 국가정보: 이집트』, 2014. 6, pp.81~83

2007년부터 무차별적인 중국상품의 유입을 견제하고 동유럽, 터키, 우크라이나 등 저가 철근, 전구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한 규제는 타이어와 DOP 등 2건으로 조사됨⁹¹⁾

□ 한편, 특정 상품의 수입 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의 면사제품에 대해서, 2014년부터 강봉에 대해서 발동 중에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차량용 축전지와 백설탕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였음⁹²⁾

○ 최근 이집트 로컬 제조업체들의 보호를 명목으로 관세율이 0%이던 강철봉에 7.3%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바 있음

〈표 Ⅲ-8〉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이집트의 수입 규제

한국 HS 코드	품목명	규제 내용	조사개시일
4011.10, 20	타이어(tires)	반덤핑관세 (규제종료)	1998-09-30
2917321000	D.O.P(Dioctyl Phthalte): PVC재료	반덤핑관세 (규제종료)	2006-09-12
5205, 5206, 5207	면사(Cotton Yarn)	세이프가드 (규제중)	2011-11-23
7213, 7214	강봉(Steel Rebar)	세이프가드 (규제종료)	2012-11-28
1701.11, 1701.12, 1701.99	설탕(Raw & White Sugar)	세이프가드 (규제종료)	2012-11-29
7213, 7214	강봉(steel rebar)	세이프가드 (규제중)	2014-10-14
8507.10	차량용 축전지 (Automotive Batteries)	세이프가드 (조사중)	2014-12-17
1701.99	백설탕(White Sugar)	세이프가드 (조사중)	2015-04-15

출처: 한국무역협회 통상·수입규제, 국가별 현황,
http://www.kita.net/trade_import2/front/impostate/restStatCouList.jsp, 검색일자 2015. 8. 14.

91) 1999.10월부터 반덤핑 관정을 받아 오다, 2010.10월 반덤핑 조치가 종결되었음. 서류심사만 거친 우성(현 넥센)의 타격이 가장 심한 반면, 금호타이어는 전체적으로 무혐의 판정을, 한국타이어는 경트럭용만 6.5%덤핑 관세가 부과되었음

92) 한국무역협회 통상·수입규제, 국가별 현황,
http://www.kita.net/trade_import2/front/impostate/restStatCouList.jsp, 검색일자 2015. 8. 14.

5. 보세제도 및 자유무역지대

가. 보세제도

- 이집트에서는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하여 주고 물품의 장치 또는 일부 작업을 허용하는 보세구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제3장에서 정하는 보세구역의 종류는 보세창고와 보세판매장으로 한정되어 있음
- 세관으로부터 보세창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세창고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요건을 심사를 통해 허가증을 발급해 줌
 - 보세창고를 허가할 때는 보세창고의 유형, 장소, 매년 납부 이용료, 장치대상 물품 등을 명시함
- 보세창고로 허가를 받으면 장치된 물품의 안전과 보안 관리, 검사에 필요한 장비·운송수단의 제공,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등의 보세창고 관리의무가 있음
-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창고 운영인에게 법정금액의 관세납부 보증금과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관세납부 보증금은 항만 내에 설립된 보세창고의 경우 관세 및 기타 세금 추정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항만 외의 경우 10%로 함
-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세청의 승인을 받아 3개월 연장이 가능함
 - 단, 공립보세구역에 장치된 수입자동차의 경우 장치기간은 1개월로 제한됨
 - 장치기간이 경과하거나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화물은 세관에서 공매처리를 할 수 있으며, 반출 통지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을 공제한 후 매각 처리함

- 보세구역에서는 물품의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공정을 수행할 수 없으며, 허가를 받아 재수출 목적으로 외국 원재료를 혼합하거나 물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컨테이너 개장과 혼입 작업을 허용함
 - 단, 긴급한 경우 관세청의 서면허가를 받아 보세창고 운영인이 추가비용을 납부하면 상기 컨테이너 개장과 혼입 작업이 가능하기도 함
- 보세구역에 장치된 화물을 반출하는 때에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며, 반출 횟수는 3회로 제한함
- 일반화물의 경우 보세창고에서 7일간 무료장치가 허용되고 보세창고 또는 냉장시설로 이송이 가능함

나. 자유무역지대

- 이집트의 자유무역지대(Free Zone)는 수출진흥, 외국자본 유치, 신기술 도입 및 고용확대를 목적으로 해외 투자를 도모하는 지역으로, 설립과 운영은 투자법(the Investment Law, Law No. 8 of 1997)에 근거함⁹³⁾
 - 알렉산드리아 자유지역 등 몇 곳은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운영되고 있었음
- 이집트 투자청(GAFI, General Authority for Investment and Free Zones)에서 허가 요건 및 토지와 건물의 점유에 관한 규정 등 자유무역지대의 운영에 관한 정책을 주관하며, 각 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지대를 관리하는 운영위원회(Board of Directors)를 구성하여야 함
- 자유무역지대는 일반적으로 수출입 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자유무역지대에서 수행하는 공정에 필요한 모든 장비, 기계류 및

93) 이집트 투자청 홈페이지, <http://www.gafi.gov.eg/English/Pages/default.aspx>, 검색일자 2015. 8. 13.

운송장비는 관세 및 판매세가 면제됨(자동차는 제외)

- 다만 연간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보관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CIF 가격의 1%를, 가공 또는 조립 목적으로 보관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가공으로 추가되는 대금(가공 또는 조립비용)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함⁹⁴⁾
 - 목적지가 결정된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이 수수료를 면제함
 - 창고업은 반입제품 가격의 1%, 가공업은 반출되는 물품 가격의 1%, 반입 또는 반출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회계보고서상 확인되는 이윤의 1%로 함 (Law No. 133/2010)

- 공공(public/general)자유무역지대와 사설(private)자유무역지대의 유형으로 구분되나, 현재는 알렉산드리아 등을 포함하여 공공자유무역지대 10곳으로 운영하고 있음⁹⁵⁾
 - 나세르(Nasr City), 포트사이드, 수에즈(Suez), 이스마일리아(Ismailia), 다미에타(Damietta), 미디어(Media), 시빈알카움(Shebin El- Kom), 포트사이드 동부(Port Said East Port) 등

- 사설자유무역지대에서는 한 가지 작업만을 수행하도록 제한하며, 승인절차를 통해 보세 운송을 허용하고 있음⁹⁶⁾
 - 비료, 철(iron), 철강 및 석유화학 제조, 원유 정제, 운송용 천연가스 등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사설자유무역지대 진입을 금지하고 있음(Article 10 of Law 114/2008)

94) Shalakany Law Office Legal Advisors, *Guide to Doing Business in Egypt*, March 2012, pp.12~13

95) 이집트 통상진흥협회(EITP, Egyptian International Trade Point) 홈페이지, <http://www.tpegypt.gov.eg/Eng/FreeZone.aspx>, 검색일자 2015. 8. 14.

96) 상동

[그림 Ⅲ-8] 이집트 자유무역지대 현황



출처: KOTRA 국가정보, 이집트의 투자 입지 여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86815&cid=48621&categoryId=48621>, 검색일자 2015.
 8. 14.

6. AEO 제도

- WCO에서 권고하는 인증수출입자(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⁹⁷⁾는 적법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관세영역의 보안책임을 기업들과 분담하고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집트는 2005년 10월 ‘customs compliance program’ 수준의 AEO 유사제도인 수입자 공인제도(Account Management Service, AMS)를 도입하였음
 - WCO는 2014년 보고서에서 이집트를 포함한 13개국을 일반적으로 관세납부 등의 통관 요건에 초점을 두는 ‘customs compliance program’ 수준으로 분류함⁹⁸⁾

97) WCO의 SAFE Framework의 일환으로 미국은 C-TPAT, EU 지역은 AEO로 불림. 2014년 3월 기준으로 WCO의 179개 회원국 가운데 168개 국가가 SAFE Framework의 시행에 동의한 상태로, 우리나라, 미국 등을 포함한 53개국이 시행단계, 10개국이 시행 준비단계임

98) 세계관세기구(WCO), Compendium of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Programmes 2014 Edition, Compliance and Facilitation Directorate, 2014, p.83

- 수입자 공인제도는 AEO와 목적, 운영기관, 적용 기준 등이 유사하지만, 공인대상, 자가 평가, MRA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음
 - 통관 적법성과 신속통관을 지향하고, 교역 촉진 및 화물 안전 표준(SAFE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SAFE Framework of Standards)을 적용하고 관세청의 관리를 통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유사함⁹⁹⁾
 - 수출입자로 하여금 통관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재무상태가 건전할 것을 요구하는 세관간소화프로그램으로, SAFE Framework의 Annex III의 보안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AEO와 성격을 달리함
 - AEO제도는 수입자 공인제도와 달리 ‘SAFE Framework of Standards’에 따라 원산지조사, 전자적 자료교환, 통관행정 관계당국과의 참여와 협조, 주기적인 자가 평가를 실시함

- 이집트는 주변 국가들의 AEO제도 도입 움직임에 동참하고 신속통관을 확대하고자 2013년 말 재무부(재무부 결정(Decision) No. 204/2013)에서 AEO제도를 실시하기로 함¹⁰⁰⁾

- 수입자 공인제도는 수입 무역량과 준법점수 및 위험관리능력에 근거하여 선정하며, 2013년 기준으로 430개의 기업이 공인된 상태로 조사됨¹⁰¹⁾

- 수입자 공인제도 운영을 통해 수입통관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통관 절차의 신속성과 법규 준수도를 높여, 수입자와 관세당국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수입자 위주의 관세행정을 지향하고 있음

99) Ahmed Mahmoud Abd Elghany Metwally, Account Management Service(AMS) as an Application of Egyptian Customs Modernization service to facilitate the trade, Arab Academy for Science, Technology and Maritime Transport, 2013, pp. 163~167

100) Carlos Garcia Pinilla, “Egypt customs update: toward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best practice,” *Customs & International Trade Communiqué*, Volume 67, PwC, January 2015.

101) Ahmed Mahmoud Abd Elghany Metwally, Account Management Service(AMS) as an Application of Egyptian Customs Modernization service to facilitate the trade, Arab Academy for Science, Technology and Maritime Transport, 2013, p.119

〈표 Ⅲ-9〉 AMS제도와 AEO제도 비교

구분		AMS	AEO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 적법성과 신속통관을 확보하기 위한 특혜제도 · 재무부 차원에서 관세당국에서 운영 · WCO의 SAFE Framework of Standards를 도입 · 주기적인 심사, 감독, 지속적인 평가 등 관세당국의 관리에 의해 운영 	
차이	적용 대상	수입자들에게만 적용	수입자뿐만 아니라 국제물류당사자 모두
		대량 수입업체	대기업, 다국적기업을 포함하여 중소기업도 포함
	SAFE Framework 보안기준 적용	해당사항 없음	원산지조사, 전자적 자료교환, 통관행정 관계당국과의 참여와 협조, 주기적인 자가 평가를 실시
	MRA 적용	해당사항 없음	MRA를 체결한 국가에서 AEO 혜택 적용 가능

출처: Ahmed Mahmoud Abd Elghany Metwally, Account Management Service(AMS) as an Application of Egyptian Customs Modernization service to facilitate the trade, Arab Academy for Science, Technology and Maritime Transport, 2013, pp.163~165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관세청 및 통관 관계당국 차원에서는 관세행정의 중복성과 비효율성 감소 효과를 지향하고 있음¹⁰²⁾
 - 수입요건 확인, 통관 원활화를 위한 당국 간 업무협약, 항만에서 불필요한 검사절차 제거 등의 통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저위험 화물에 대해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자원을 고위험 화물 위주로 활용함으로써 위험평가와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음
 - 납부세액을 사전에 징수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공인된 수입자에게는 수입화물의 즉시반출, 담보 지원 또는 비용 감소를 통한 통관비용 감축, 수입자와 세관 간의 업무협약 등의 혜택을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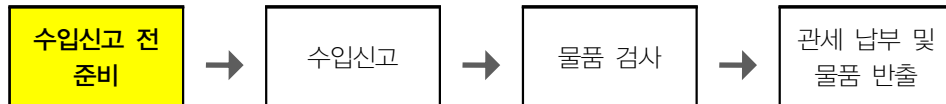
- 현재 이집트 관세청은 AEO 홈페이지¹⁰³⁾를 구축하고 있으며, AEO 홍보활동에 노력 중임

102) 세계무역기구(WTO), Communication from Egypt-Reforming Customs Authority, Fighting Corruption, and the Use of Computers, TN/TF/W/69, October 2005.

103) 이집트 AEO 홈페이지, <http://www.aoe-egypt.com/>

IV. 통관절차별 고려사항

1. 수입신고 전 준비 단계



가. 통관절차상 특이사항

-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업자 등록증(Dealer's Card)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무역업자 등록을 안 한 수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국세청 등록증(Sales Tax Authority registration certificate)을 제출하고 세관에서 임시등록을 허용하고 있음¹⁰⁴⁾
- 이집트에서 제출하여야 하는 통관서류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지역에서도 수출서류 6개, 8개의 수입서류를 요구하는 것과 OECD 고소득국가들에서 평균 4개의 통관서류를 요구하는 것에 비해 종류가 다소 복잡한 편임¹⁰⁵⁾
 - MENA¹⁰⁶⁾(Middle East & North Africa) 국가들보다 수출과 수입의 경우 모두 2개

104)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Doing Business in Egypt: 2015 Country Commercial Guide for U. S. Companies, <http://photos.state.gov/libraries/egypt/5/business/2015EgyptCCG.pdf>, January 2015, 검색일자 2015. 1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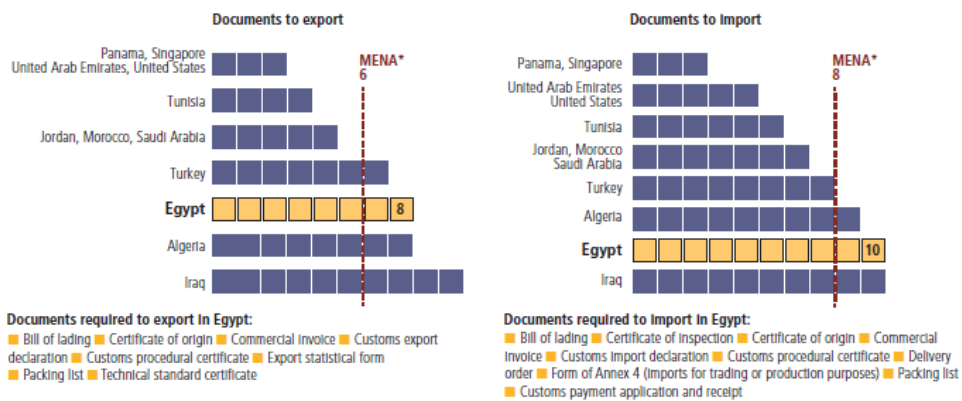
105)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Doing Business in Egypt 2014: Understanding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http://www.doingbusiness.org/~media/GIAWB/Doing%20Business/Documents/Subnational-Reports/DB14-Egypt.pdf>, 2013, 검색일자 2015. 6. 26, p.42

106) 중동·북아프리카 경제협력기구는 아랍연맹과 북아프리카 이슬람권 국가인 모로코 리비아와의 종교·경제·자원·군사 협력체로, 이집트를 포함하여 아랍에미리트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모로코, 오만, 이스라엘, 쿠웨이트 등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됨

서류를 더 제출해야 함

-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 가운데서도 이라크를 제외하고는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들보다 서류 구비 요건이 까다로운 편임

[그림 IV-1] 수출입통관 구비서류 국가별 비교



주: MENA는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의 평균을 나타냄
 출처: The World Bank and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2013), p.42

- 또한 이집트 세관은 이집트로 수출하고자 하는 외국의 수출자들에게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를 해당 외국에 주재하는 이집트 영사로부터 공인('legalize')을 받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¹⁰⁷⁾
 - 모든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등 선적서류에 대해 한국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거친 후 추가적으로 주한 이집트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요구하고 있음¹⁰⁸⁾
 - 1회 USD 180이 지출되고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출비용이 증가하고 선적기간 준수에 차질을 빚고 있음¹⁰⁹⁾

107)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Doing Business in Egypt 2014: Understanding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http://www.doingbusiness.org/~media/GIAWB/Doing%20Business/Documents/Subnational-Reports/DB14-Egypt.pdf>, 2013, 검색일자 2015. 6. 26, pp.42~43

10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카이로 무역관, 『KOTRA 국가정보: 이집트』, 2014. 6, p. 139

109) 상동

- 각 구비서류별로 살펴보면, 상업송장에는 품목 설명, 가격명세, 순증량 및 총증량, 제조업체명, 주소, 지불조건 등을 기재하는데, B/L상에 기재되는 수하인 명, 주소, 품목설명, 운임 및 기타 비용명세 등과 일치하여야 함¹¹⁰⁾
- 원산지증명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외국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원재료의 원산지와 사용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¹¹¹⁾
 -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거나 상업용 또는 재판매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함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고가격이 USD 5,000 이상인 경우 상업적 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임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거래서(Bank Transfer Form)의 제출이 요구됨¹¹²⁾
- 관계 당국에서 수출입을 규제하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통관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음
 - 통신장비, 의약품, 식품, CD, 인쇄물, 화학물질 등은 수입규제품목으로 해당되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의료용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의약청(the Medicine Political Authority)의 판매승인서 원본, 의약청의 승인을 받은 상업송장, 은행의 지급증명서, 세관수수료(Customs administration charges) 납부영수증, 은행의 직인이 찍힌 상업송장, 판매허가서 원본이 요구됨¹¹³⁾
 - 제조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기 서류에 기업의 직인이 첨부된 'Form 12'를

1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카이로 무역관, 『KOTRA 국가정보: 이집트』, 2014. 6, p. 103

111) 상동

112) DHL, Middle East Customs Guide, http://www.dhl.com.qa/content/dam/downloads/ae/express/shipping/customs_guide/dhl_express_middle_east_customs_guide.pdf, February 2015, 검색일자 2015. 8. 24, 한국조세연구원에서 2015년 11월에 실시한 설문에 대한 응답내용임

113) FEDEX, Shipping to Egypt, <http://www.fedex.com/eg/shippingguide/importguidelines/>, 검색일자 2015. 4. 28.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의약품 이외의 물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Form 11, 세관행정비용 납부영수증, 은행 지급증명서, 은행의 직인이 찍힌 상업송장, 대사관 또는 영사 확인을 거친 원산지증명서, 판매허가서 원본 등이 요구됨¹¹⁴⁾
- 이집트는 지난 2010년부터 중국산 제품의 이집트 수입 시 중국 정부의 품질인증인 중국산 검사 및 검역증명서(China Inspection and Quarantine, CIQ)를 제출하는 것을 수입요건으로 인정해오다가, 2015년 7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이를 악용하거나 오히려 저품질의 물품이 수입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였음¹¹⁵⁾
 - 하지만 이집트 통상산업부는 아직 중국에서 선적되는 수입제품에 대하여 이를 보완할 품질인정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은 상태임

나. 업무상 유의점

- 모든 식품 및 주사기, 카테터와 같은 일부 특정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시 유통기한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수입통관에 최소 2주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유통기한을 확인하여야 함¹¹⁶⁾
- 2006년부터 모든 수입식품에 아랍어와 영어를 병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특히 가금류 및 육류제품의 경우 이슬람 종교의식에 반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114) 상동

115) 이해진(카이로 무역관), 이집트, 중국 CIQ 인증 인정 폐지,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Page=1&RowCountPerPage=10&ARTICLE_ID=5029795&ARTICLE_SE=20310, 2015. 7. 2, 검색일자 2015. 7. 11.

116) Salah Mansour,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 Narrative: Egypt,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2009., 미국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Doing Business in Egypt: 2015 Country Commercial Guide for U. S. Companies, <http://photos.state.gov/libraries/egypt/5/business/2015EgyptCCG.pdf>, January 2015, 검색일자 2015. 10. 12.

하고, 포장용기의 안과 밖에 모두 라벨을 부착하는 등 표기규정에 유의하여야 함¹¹⁷⁾

- 섬유제품, 가죽 및 가죽제품, 중고 또는 반품된 의료장비·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이 이집트에 도착하기 전에 적합성 인증서를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자가 검사를 신청하고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놓아야 함¹¹⁸⁾
 - 섬유제품과 가죽 및 가죽제품의 수출자는 검사기관에 송장, B/L, 포장명세서, 상업 송장 등 선적서류와 특허받은 트레이드 마크, 물품 가격, 수량, 원산지 등의 정보를 제시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 의료장비, 의료기기, 컴퓨터 영상장비 등에 대해서는 수출국으로부터 안전성, 유지 보수 운영의 적정성, 제조일 등과 관련된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영사 확인을 받아 놓아야 함

- 2009년 6월부터 이집트 세관은 이중원산지(Double Origin)인 경우 수입 불가,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 제출, 주한 이집트 대사관 인증 등의 원산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 원본이 아니거나 대사관 인증이 없으면 통관 보류 및 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¹¹⁹⁾
 - 제품 표면, 선적서류, 원산지 증명서의 원산지가 모두 동일해야 통관이 가능하며,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통관이 불가
 - 중계무역의 경우 혹은 부품 중 일부를 주변국에서 조달하는 경우 이중원산지에 해당하니 유의하여야 함
 - 한국에서 선적된 제품의 일부 부품에 타국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부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국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

- 또한 이집트 세관은 원산지증명서를 분실해 당사자에게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원본 부수를 충분히 마련해두는 것이 권고됨¹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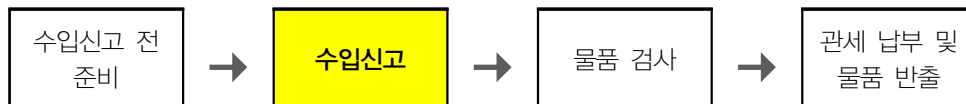
117) 상동

118) 상동

119)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14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중동』, 2014. 12, pp.378~37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카이로 무역관, 『KOTRA 국가정보: 이집트』, 2014. 6, pp.77~78

- 신용장 개설에 관해 정부나 중앙은행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각 은행은 신용장 개설 의뢰자의 신용을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외환보유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 상당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¹²¹⁾
- 2012년 12월 이후 외환송금이 제한 또는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신송금(T/T) 방식과 신용장을 함께 이용하는 대금결제방식이 증가하고 있음¹²²⁾
 -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외환 수급상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전신송금으로 대금의 30~50% 정도를 결제하고 신용장을 개설하여 나머지 대금을 결제함

2. 수입신고 단계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이집트 통관시스템의 전산화는 아직 과도기에 있는 상태로, 일부 주요 항구에는 현대화 세관(Modern custom centers)이 설립되어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가 가능한 데이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¹²³⁾

120) 상동

121)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14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중동』, 2014. 12, p.38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카이로 무역관, 『KOTRA 국가정보: 이집트』, 2014. 6, p.77

122)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14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중동』, 2014. 12, p.380

123)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Doing Business in Egypt 2014: Understanding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http://www.doingbusiness.org/~media/GIAWB/Doing%20Business/Documents/Subnational->

- 일부 세관에서는 EDI 시스템 구축 이후 수출입감독청에서 수입신고서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요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있음
 - 쇼크나(shkhna) 항의 경우에는 항만업자와 수입자가 물품검사 장소와 시간 예약, 제출서류의 접수 현황과 물품의 도착 여부 등을 문자메시지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이집트에서 통관절차가 신속하지 않은 것은 아직 EDI 시스템이 상용화되지 않은 것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아직 행정서류의 간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비서류의 종류가 많은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음¹²⁴⁾
 - 이집트의 통관시스템은 아직 불안정하여 수작업을 통한 수입신고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통관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발급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이집트 통관환경의 무역 분야 순위가 낮은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예를 들면 통상 다른 국가에서 수입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을 이집트에서는 수입신고서, 통관증명서(customs procedural certificate)와 관세납부신청서 및 영수증(customs payment application and receipt)을 관세청에 제출하여야 함

-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TradeNe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세청 사이트에서 통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전에 수입허가가 필요한 물품은 구비서류를 가지고 직접 세관에 신고해야 함¹²⁵⁾
 - 상업송장, 적하목록 내용이 물품과 일치하도록 유념하여 작성해야 문제발생의 소지가 적음

Reports/DB14-Egypt.pdf, 2013, 검색일자 2015. 6. 26, p.44

124)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Doing Business in Egypt 2014: Understanding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http://www.doingbusiness.org/~media/GIAWB/Doing%20Business/Documents/Subnational-Reports/DB14-Egypt.pdf>, 2013, 검색일자 2015. 6. 26, p.42

125) 이집트 관세청 홈페이지, Customs services on the new online, <http://www.customs.gov.eg/NewCustomSerives.aspx?Id=28>

-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신고서를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규정됨
- 통관시스템에 수입신고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관세청에서 일련번호(Customs Register)를 부여하여야 수입신고서가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간주됨
 - 도착 전 수입신고서를 거치는 물품을 제외하고, 제출된 적하목록에 근거하여 물품의 도착지 관할 세관에 접수됨
- 수입신고 전에 품질관리국의 인증 또는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인증서 또는 허가서를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함
- 세관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전산시스템에 접수된 후 검사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수정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세청의 승인을 거쳐 수입신고서의 수정이 가능함
 - 단순한 오기로 인한 수정은 물품 반출 이전까지 가능하나, 이집트의 세관 관례상 통관절차가 매우 지연될 수 있음

나. 업무상 유의점

- 2009년에 EDI시스템이 구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입신고서와 관련 서류의 제출은 종이문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수입자는 동일한 기관에 여러 양식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서류 준비 작업이 전체 통관시간의 절반 이상을 소요하고 있는 실정임¹²⁶⁾
 - 예를 들어 관세청에 수입신고서(customs import declaration), 세관절차증명서(customs procedural certificate), 관세납부 신청서 및 영수증(customs payment application and receipt) 등 3개의 별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26)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Doing Business in Egypt 2014: Understanding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http://www.doingbusiness.org/~media/GIAWB/Doing%20Business/Documents/Subnational-Reports/DB14-Egypt.pdf>, 2013, 검색일자 2015. 6. 26, pp.42~43

- 상업송장에 기재된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나, 이집트인들은 관세 회피 목적으로 30% 이상의 저가신고를 일반화하고 있음
- 또한 국민보건부에서 이집트 자국의 유명브랜드 의약품 가격을 국제판매가격보다 10% 이하로 책정하는 ‘reference pricing system’을 시행하고 있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¹²⁷⁾
- 원칙적으로 1개의 세관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여야 하나, 2개 이상의 세관을 통해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신고서 제출 및 세관의 신고서 접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적하목록 중앙부서에 선하증권 분할을 신청하여야 함
 - 수입신고서의 내용이 각 세관에 제출되어야 함
 - 세관의 신고서 접수 이전에는 선하증권의 통합도 가능한데, 동일한 운송수단, 동일한 수하인이야 하고 동일한 세관 영역에 보관되어야 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3. 물품검사 단계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수입검사 시 선별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량검사를 실시하여 통관경비 과다 발생, 물품의 도난 및 파손, 세관공무원과의 부정거래행위 등이 초래되고 있음¹²⁸⁾
 - 항만당국은 최근 보안 기준을 강화하여 현재는 모든 컨테이너에 대해 최소한 육안

127) 미국 상무부(2014)

128)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14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중동』, 2014. 12, p.386

- 검사(visual inspection)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¹²⁹⁾
- 홍해 항만청은 물품검사를 대폭 강화하여 X-ray 스캐너를 통해 모든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있음
- 포장명세서상에 대량으로 수입되는 화물임이 입증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전체 선적 건에 대해 전수검사가 실시됨
- 각 통관위원회에서 수입신고서를 심사하여 화물과 포장명세서상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수검사를 실시함
- 특히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집트 표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제표준 부합 여부가 확인된 후에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용가능한 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기존의 표준을 적용하려는 관례가 있음¹³⁰⁾
- 이러한 적합성 인증절차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standard creation at port”인데, 새로운 물품이 수입될 때 적용 가능한 인증표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OS 또는 세관에서 ‘역사적으로 일반적(historically common in nature)’인 것으로 간주되는 표준을 적용하려고 함
 - 모든 수입물품은 서면으로 된 기술표준에 대한 인증서 또는 이집트 표준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함
- 또한 이집트의 위생 및 검역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는 기술적, 과학적인 타당성이 결여되고 일관성이 부족한 데다 내국인과 차별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수출자들로 하여금 이집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129)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Doing Business in Egypt 2014: Understanding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http://www.doingbusiness.org/~media/GIAWB/Doing%20Business/Documents/Subnational-Reports/DB14-Egypt.pdf>, 2013, 검색일자 2015. 6. 26, p.44

130)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Doing Business in Egypt: 2015 Country Commercial Guide for U. S. Companies, <http://photos.state.gov/libraries/egypt/5/business/2015EgyptCCG.pdf>, January 2015, 검색일자 2015. 10. 12.

있음¹³¹⁾

- 과일과 채소류에 대한 검역기준이 자주 변경되고 적용 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됨
 - 특히 국내물품을 배제하고 수입물품에만 적용되는 품질표기 및 포장요건은 수입통관 절차에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가금류 및 육류가공품에 대한 직접운송원칙과 아랍어로 표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WTO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됨
- 자유무역지대로 수입되는 환적화물, 동일하게 포장된 동종화물 및 기타 수입신고서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의 경우 X-ray 검사를 거쳐야 함
- 스캐너 등의 검사기기가 도입되지 않아 검사가 자동화되어있지 않거나 물품검사 비율이 높은 세관의 경우 통관 지연이 초래되어 세관별로 항만 작업시간과 통관기간이 달라지는 요인이 되고 있음¹³²⁾
- 소크나(sokhna) 항의 경우 물품검사가 까다로워 통관기간이 알렉산드리아 항보다 2일이나 더 소요됨
 - 일부 항만에서는 스캐너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시간은 여전히 지체되고 있음
 - 소크나 항의 경우 위험관리 데이터와 상관없이 모든 컨테이너를 스캔하여 오히려 종전에 비해 통관 지연을 초래하고 있음
 - 다미에타 항에도 스캐너 사용이 도입됐지만, 대량 컨테이너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이며 유지보수비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현재 이집트의 수입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 빈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

131) 상동

132)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Doing Business in Egypt 2014: Understanding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http://www.doingbusiness.org/~media/GIAWB/Doing%20Business/Documents/Subnational-Reports/DB14-Egypt.pdf>, 2013, 검색일자 2015. 6. 26, p.44

이고 있음¹³³⁾

-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선적 건에 대해서도 이전 선적 건이 수리되었는지 거부되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다시 이집트 표준의 적합성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년 검사와 시험이 반복되어 왔음
- 수출입관리국에서는 최근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물품, 수출자, 수입자, 제조자의 수입 이력을 수출입감독청의 평가기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이집트 세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수입자에게 일부 서류제출을 면제하고 낮은 검사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마련하고 최신 검사장비를 도입하는 등 컨테이너 검사비율을 낮추려 노력하고 있음

나. 업무상 유의점

-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식품 등 대부분의 수입 통관 시 품질검사 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통일된 통관검사 규정의 미비로 일선 행정담당자의 자의석 해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있지 않음¹³⁴⁾
- 수입물품 검사과정에서 식품 등 특정 물품은 수출입관리청 이외에도 3~4개의 관련 부처에서 독립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한 수입물품에 대해 여러 샘플을 제공하여야 함¹³⁵⁾
 - 물품에 따라 방사능검사, 의약품, 농림수산물에 대한 성분검사 등 검사에 필요한 별도의 샘플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의 검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짐

133)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Doing Business in Egypt: 2015 Country Commercial Guide for U. S. Companies, <http://photos.state.gov/libraries/egypt/5/business/2015EgyptCCG.pdf>, January 2015, 검색일자 2015. 10. 12.

134) 산업통상자원부 · 외교부, 『2014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 · 중동』, 2014. 12, p.378

135)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Doing Business in Egypt: 2015 Country Commercial Guide for U. S. Companies, <http://photos.state.gov/libraries/egypt/5/business/2015EgyptCCG.pdf>, January 2015, 검색일자 2015. 1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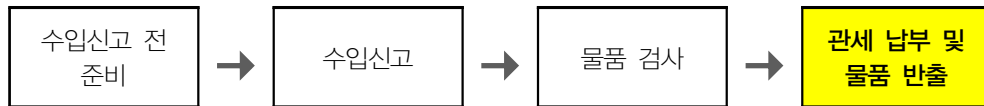
- 이집트에서는 수출입관리법 부속서 8에 규정된 품목을 의무검사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선별검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과 무역마찰을 빚기도 함¹³⁶⁾
 - WTO에 이집트에서 시행하는 수입물품 검사는 안전, 위생 및 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만 운영된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품질과 표준 면에서 “the Egyptian Standards”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
 - 이집트 표준에 부합하지 않아 수입이 거부된 사례가 한번 발생하면, 이후 세관으로부터 수입이 차단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로 인해 중국과 이집트 간의 무역분쟁이 발생하기도 함

- 또한 국제표준인증을 받은 수입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출입관리청 산하 품질관리국에서 운영하는 ‘이집트 표준’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수입자들에게는 큰 불편함으로 작용하고 있음
 - 품질관리국의 인증(ECM)을 받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검사대상이 될 수 있음

- 이집트 세관의 위생 및 검역(SPS) 검사는 투명성이 결여되고 자국물품에는 해당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전에 품질관리와 표기방법 등 이집트 표준을 숙지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수출입관리법에서 의무검사 대상품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품질관리와 표기방법 등에 대한 이집트 표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사를 수행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음

136) 중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People's Republic of China, MOFCOM), Foreign Market Access Report 2010: Arab Republic of Egypt, <http://images.mofcom.gov.cn/trb/accessory/201004/1271301827242.pdf>, 2010, 검색일자 2015. 8. 13.

4.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가. 통관절차상 특이사항

- 이집트 관세당국은 관세가액 평가 시 송장에 기재된 CIF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송장가격보다 10~30%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음¹³⁷⁾
 - 이집트는 WTO 및 WCO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액을 산출하는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제9조를 준수하고 있지 않음
- 특히 관세율 적용에 있어서 항구 및 담당자별로 편차가 심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일부 세관의 경우 규정과 전혀 관련 없는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¹³⁸⁾
- 2012년 10월부터는 신정부의 정책에 따라 통관 검사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집트 정부는 통관 서류와 L/C 개설 및 은행 송금 등을 연계시킴으로써, 외국 기업에 대해 엄격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¹³⁹⁾
 - 관세 등의 납부는 대부분 현금이 아닌 신용장 형식(Credit)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 통관 후 물품 인수까지 통상 20일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며, 수출입감독청, 관세청과 선사에서 결정하는 항만이용료, 터미널 이용료 등의 통관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 2015년 기준, 카이로 항을 통해 일반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물품검사와 통관에 USD 100, 신고서류 준비에 USD 125, 내륙 운송료 및 하역비용 USD 230, 항만 및 터미

137)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14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중동』, 2014. 12, p.378

13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카이로 무역관, 『KOTRA 국가정보: 이집트』, 2014. 6, p.93

139) 상동

널 이용료가 USD 170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¹⁴⁰⁾

나. 업무상 유의점

- 이집트 세관에서 견본품의 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예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이사 화물 반입 등 상품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자의적인 판정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¹⁴¹⁾
 - 원료, 중간재, 비내구성 소비재, 엔지니어링 견본품의 통관 시 별도의 수입허가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가액에 따라 관세를 부과함
- 소포로 수입된 화물도 간소한 통관 절차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적인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와 기타 세금 또한 부과됨¹⁴²⁾
 - 특히, 인쇄물, 전자제품, CD, 서적 등에도 세금이 부과됨
- 간단한 휴대용 견본품은 통관이 용이하나, 별송품은 4~5일의 시간이 소요되고 배송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함¹⁴³⁾
- 이집트의 관세 환급은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관료주의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서류심사만 최소 1년 이상이 걸리거나 실제로 지급받기가 매우 어려움¹⁴⁴⁾
 - 수입된 견본품이 1년 이내에 재수출되거나, 수입하는 때에 일정기간 내에 재수출될 예정임을 신고한 경우 관세를 환급함
 - 하지만 납부한 통화와 다른 통화로 지급되거나 세관의 자금 상황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처리되고 있음

140) 세계은행(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Economy Profile: Egypt, Arab Rep.*, 2014, p.71

141)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14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중동』, 2014. 12, p.378

142)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14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중동』, 2014. 12, p.386

143) 상동

14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15년 11월에 현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대한 응답 내용임

- 물품을 반송하고자 재수출하는 경우, 항공화물의 경우 신고가격의 4~25% 또는 최소 USD 30의 비용이 세관수수료로 부과됨¹⁴⁵⁾
 - 반송물품에 대한 세관수수료는 수입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가격의 100%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통관 대행업체에 반송처리 수수료로 약 USD 40을 지불하여야 함
 - 통상 재수출화물은 예정 도착일보다 2~7일이 지연됨

5. 요약

〈표 IV-1〉 이집트 통관절차별 유의사항

단계	유의 사항
1. 수입신고 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부에 무역업자 등록을 해야만 수입허가, 수입신고, 비용납부 등의 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등록이 의무적 ○ 이집트로 수출하고자 하는 외국의 수출자들에게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를 해당 외국에 주재하는 이집트 영사로부터 공인("legalize")을 받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등 선적서류에 대해 한국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거쳐 주한 이집트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요구하고 있음 - 1회 USD 180이 지출되고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 ○ 신고가격이 USD 5,000 이상인 경우 상업적 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임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거래서(Bank Transfer Form)의 제출이 요구됨 ○ 모든 식품뿐만 아니라 주사기, 카테터와 같은 일부 특정 물품에 대하여도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유통기한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이집트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통관시간이 최소 2주 이상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여 사전에 유통기한을 확인하여야 함 ○ 2006년부터 모든 수입식품에 아랍어와 영어를 병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특히 가금류 및 육류제품의 경우 이슬람 종교의식에 반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고, 포장용기의 안과 밖에 모두 라벨을 부착하는 등 표기규정에 유의하여야 함 ○ 섬유제품, 가죽 및 가죽제품, 중고 또는 반품된 의료장비·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이 이집트에 도착하기 전에 적합성 인증서를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자가 검사를 신청하고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놓아야 함

145) FEDEX, Shipping to Egypt, <http://www.fedex.com/eg/shippingguide/importguidelines/>, 검색일자 2015. 4. 28.

〈표 IV-1〉의 계속

단계	유의 사항
2. 수입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 전에 품질관리국의 인증 또는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인증서 또는 허가서를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함 ○ 상업송장에 기재된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나, 이집트 인들은 관세 회피 목적으로 30% 이상의 저가신고를 일반화하고 있음 ○ 이집트 자국의 유명브랜드 의약품 가격을 국제판매가격보다 10% 이하로 책정하는 'reference pricing system'을 시행하고 있음 ○ 2009년에 EDI시스템이 구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입신고서와 관련 서류의 제출은 종이문서로 이루어지고 있어, 서류 준비 작업이 전체 통관시간의 절반 이상을 소요하고 있는 실정임
3. 물품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검사 시 선별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량검사를 실시하여 통관 경비 과다 발생, 물품의 도난 및 파손, 세관공무원과의 부정거래행위 등이 초래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집트 표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제표준 부합 여부가 확인된 후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용가능한 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기존의 표준을 적용하려는 관례가 있음 -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식품 등 대부분의 수입 통관 시 품질조사 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통일된 통관검사 규정의 미비로 일선 행정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있지 않음 ○ 수입물품 검사과정에서 식품 등 특정 물품은 수출입관리청 이외에도 3~4개의 관련 부처에서 독립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한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여러 샘플을 제공하여야 함 ○ 국제표준인증을 받은 수입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출입관리청 산하 품질관리국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이집트 표준'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입자들에게는 큰 불편함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집트 세관의 위생 및 검역 검사는 투명성이 결여되고 자국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 기준을 수입물품에 적용하고 있어, 사전에 품질관리 및 표기방법 등 이집트 표준을 숙지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스캐너 등의 검사기기가 도입되지 않아 검사가 자동되지 않거나 물품검사 비율이 높은 세관의 경우 통관 지연을 초래하고 있음 ○ 최근 항만당국은 보안 기준을 강화하여 현재는 모든 컨테이너에 대해 최소한 육안검사(visual inspection)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4. 세금 납부 및 물품 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 관세당국은 관세가액 평가시 송장에 기재된 CIF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송장가격보다 10~30%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음 ○ 특히 관세를 적용에 있어서 항구별 담당자별로 자의적인 편차가 심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일부 세관의 경우 규정과 전혀 관련없는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통관 후 물품 인수까지 통상 20일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며, 수출입감독청, 관세청과 선사에서 결정하는 항만이용료, 터미널 이용료 등의 통관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 소포로 수입된 화물도 간소한 통관절차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와 기타 세금 또한 부과됨 ○ 이집트의 관세 환급은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관료주의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서류심사만 최소 1년 이상이 걸리거나 실제로 지급받기가 매우 어려움

- 이집트 통관 절차상 유의사항을 정리해보면, 수입신고 전 '이집트 표준'에 따른 검사대상 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모든 상업서류는 주한이집트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특히 주의하여야 함

- 선별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량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무검사대상 이외에도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이집트 표준'에 따른 품질검사 선별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통관 지연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 게다가 대부분 항구의 전자통관시스템이 아직 불안정하여 문서제출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수입통관시간은 최소 2주 이상으로 예상하여야 함

참고문헌

- 농수산물유통공사,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동 이머징 마켓 진출여건(이집트 편)』, 2011.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카이로 무역관, 『KOTRA 국가정보: 이집트』, 2014. 6.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14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중동』, 2014. 12, pp.375~418
정윤택, 『주요 수출 대상국의 의약품 평가시스템 분석-이집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5 세계국가편람』, 2015, pp. 134~137

Shalakany Law Office Legal Advisors, *Guide to Doing Business in Egypt*, March 2012.

Salah Mansour,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 Narrative: Egypt*,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2009.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Economy Profile: Egypt, Arab Rep.*, 2014.

World Customs Organization, *Compendium of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Programmes 2014 Edition*, Compliance and Facilitation Directorate, 2014.

World Trade Organization, *Communication from Egypt-Reforming Customs Authority, Fighting Corruption, and the Use of Computers*, TN/TF/W/69, October 2005.

〈웹사이트〉

김효근, KOTRA 카이로 무역관 해외투자진출 정보포털, 이집트 정부, 수입품목 관세율 대
폭 개정,

http://www.ois.go.kr/portal/page?_pageid=93,721498&_dad=portal&_schem

a=PORTAL&p_deps1=info&p_deps2=&oid=1130417102822689928, 2013. 4, 검색일자 2015. 6. 13.

노정민(KOTRA 카이로 무역관), 한국산 자동차, 이집트 시장점유율 1위!,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6685&ARTICLE_SE=20302, 검색일자 2015. 4.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카이로 무역관, 국가정보,

http://www.kotra.or.kr/KBC/cairo/KTMIUI18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704&TOP_MENU_CD=33962&LEFT_MENU_CD=35649&MENU_CD=35649#nolink, 2015. 5, 검색일자 2015. 11. 22.

_____, 국가정보,

http://www.kotra.or.kr/KBC/cairo/KTMIUI18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704&TOP_MENU_CD=33962&LEFT_MENU_CD=35649&MENU_CD=35649#nolink, 2015. 5. 기준, 검색일자 2015. 8. 13.

이집트 정부대행검사기관 코테크나 홈페이지,

<http://www.cotecna.kr/ko-KR/Services/Government-Programs/Egypt>, 검색일자 2015. 11. 20.

이집트 중앙은행(Central Bank of Egypt), Economic Review Volumes. 54, No. 1,

<http://www.cbe.org.eg/NR/rdonlyres/EBB0F024-4D32-4049-BC3E-178B565C08C5/2553/EconomicReviewVolumesVol54No120132014.pdf>, 2013~2014, 검색일자 2015. 4. 25.

이해진(카이로 무역관), 이집트, 중국 CIQ 인증 인정 폐지,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Page=1&RowCountPerPage=10&ARTICLE_ID=5029795&ARTICLE_SE=20310, 2015. 7. 2, 검색일자 2015. 7. 11.

한국무역협회, 국가의 지역별 수출입,

<http://stat.kita.net/stat/world/trade/CtrProd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15. 4. 13.

_____, 국가 수출입, <http://stat.kita.net/stat/kts/ctr/CtrItem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15. 4. 13.

한국무역협회 통상·수입규제, 국가별 현황,

http://www.kita.net/trade_import2/front/impostate/restStatCouList.jsp,
검색일자 2015. 8. 1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집트 인증(CE마크 필수),

<http://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menuId=MENU00291&maxIndex=99999999999999&minIndex=99999999999999&schType=0&schText=&categoryId=&upDown=0&boardStyle=&no1=0&linkId=125833>,
2013. 1. 29, 검색일자 2015. 11. 2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가별 투자환경위험평가,

<http://keri.koreaexim.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2&menuid=007001005002&pagesize=10&boardtypeid=210&boardid=24924>,
2015. 6, 검색일자 2015. 8. 14.

Ahmed Mahmoud Abd Elghany Metwally, Account Management Service(AMS) as an Application of Egyptian Customs Modernization service to facilitate the trade, <https://aeomasr.files.wordpress.com/2014/10/mody-research-finish-2.pdf>, 2013, 검색일자 2015. 8. 24.

Carlos Garcia Pinilla, “Egypt customs update: toward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best practice”, Customs & International Trade Communique, Volume 67, PwC, January 2015.

Central Bank of Egypt(이집트 중앙은행), Oct 2014 Statistical Bulletin, [http://cbe.org.eg/CBE_Bulletin/2014/Bulletin_2014_10_Oct/48_32_Net_Foreign_Direct_Investment_In_Egypt_\(FDI\)_by_country.pdf](http://cbe.org.eg/CBE_Bulletin/2014/Bulletin_2014_10_Oct/48_32_Net_Foreign_Direct_Investment_In_Egypt_(FDI)_by_country.pdf), 검색일자 2015. 4. 20.

DHL, Middle East Customs Guide,

<http://www.dhl.com.qa/content/dam/downloads/ae/express/shipping/custo>

ms_guide/dhl_express_middle_east_customs_guide.pdf, February 2015, 검색
일자 2015. 8. 24.

Egypt Customs Authority(이집트 관세청), Organizational Structure,
<http://www.customs.gov.eg/OrganizationalStructure/OrganizationalStructure.html?Id=5>, 검색일자 2015. 4. 3.

Egyptian International Trade Point(EITP, 이집트 통상진흥협회), Egyptian Foreign
Trade With Economic Group,
http://www.tpegypt.gov.eg/Statistics/Egyptian_Geographic_%20group.pdf,
검색일자 2015. 8. 13.

_____, Egyptian Foreign Trade With World,
http://www.tpegypt.gov.eg/Statistics/Egyptian_%20sectors.pdf, 검색일자
2015. 8. 13.

_____, http://www.tpegypt.gov.eg/Statistics/Egyptian_%20sectors.pdf, 검색일자
2015. 4. 3.

Embassy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Doing Business in Egypt: 2010
Guideline for Netherlands Companies,
http://egypt.nlembassy.org/binaries/content/assets/postenweb/e/egypte/net-herlands-embassy-in-cairo/import/products_and_services/guidelines-for-doing-business-in-egypt, August 2010, 검색일자 2015. 8. 13.

Ernst and Young,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15, April 2015,
[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Worldwide-VAT-GST-and-sales-tax-guide-2015/\\$FILE/Worldwide%20VAT,%20GST%20and%20Sales%20Tax%20Guide%202015.pdf](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Worldwide-VAT-GST-and-sales-tax-guide-2015/$FILE/Worldwide%20VAT,%20GST%20and%20Sales%20Tax%20Guide%202015.pdf), pp. 266~271, 검색일자 2015. 5. 13.

ESCWA(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Key
Factors in Establishing Single Windows for Handling Import/Export
Procedures and Formalities: Trade Facilitation and the Single Window,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radfa_e/case_studies_e/escwa_e.pdf,
November 2011, 검색일자 2015. 4. 3.

FEDEX, Shipping to Egypt,

<http://www.fedex.com/eg/shippingguide/importguidelines/>, 검색일자 2015. 4. 28.

Ministry of Commerce People's Republic of China(MOFCOM, 중국 상무부), Foreign Market Access Report 2010: Arab Republic of Egypt,

<http://images.mofcom.gov.cn/trb/accessory/201004/1271301827242.pdf>, 2010, 검색일자 2015. 8. 13.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Doing Business in Egypt 2014: Understanding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http://www.doingbusiness.org/~media/GIAWB/Doing%20Business/Documents/Subnational-Reports/DB14-Egypt.pdf>, 2013, 검색일자 2015. 6. 26.

Office of the Unites States Trade Representative,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reports-and-publications/2014-NTE-Report>, 검색일자 2015. 4. 13.

U.S. Department of Commerce(미국 상무부), Doing Business in Egypt: 2015 Country Commercial Guide for U. S. Companies,

<http://photos.state.gov/libraries/egypt/5/business/2015EgyptCCG.pdf>, January 2015, 검색일자 2015. 10. 12.

WTO, Tariff Profiles, http://stat.wto.org/TariffProfiles/EG_e.htm, 2014, 검색일자 2015. 4. 13.

〈부록 I〉 비즈니스 팁¹⁴⁶⁾

- 약속 시간을 맞추지 않는 것이 이집트 사회의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약속을 정하는 경우 이메일보다는 전화를 통해 약속시간을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함

- 이집트 사람들은 선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물을 통해 상대방의 호감을 살 수 있음
 - 보석류, 시계 등 화려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너무 고가의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음
 - 한국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기념품이나 현지에서 흔히 구하기 힘든 디지털 액자 등도 좋은 선물 품목 중 하나임

- 일부 이집트인들은 술과 고기를 판매하는 한국식당에서 식사 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양고기전문점, 해산물식당이나 호텔 내에 위치한 고급 음식점을 가는 것이 좋음
 -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 신자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술, 이슬람 식으로 도살되지 않은 고기는 먹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이집트는 전통적인 이슬람 복장을 입는 경우가 거의 없이 정장차림이 적당하며, 고위직과의 만남에서는 넥타이 착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넥타이는 흰색, 검은색, 파란색 계통의 색깔이 무난하며 붉은색, 분홍색 계통의 색깔은 피하는 것이 좋음
 - 바이어가 집에 초대하는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반바지나 노출이 심한 옷은 피해야 함

146) Kotra 카이로 무역관, 국가정보-비즈니스 에티켓,
http://www.kotra.or.kr/KBC/cairo/KTMUI18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704&TOP_MENU_CD=33962&LEFT_MENU_CD=35649&MENU_CD=35649#nolink, 검색일자 2015. 11. 29, 주이집트 대한민국 대사관,
<http://egy.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5389&seqno=752330>, 검색일자 2015. 11. 29.

- 사교를 위한 대화나 식사 에티켓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왼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악수를 하거나 물건을 건네받을 때도 가급적이면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 어른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안지 말고, 바닥에 앉을 때에는 발바닥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남자는 여자를 주시해서는 안 되고 여자가 먼저 청할 경우에만 악수하여야 함
 - 부녀자의 안부를 묻거나 다른 사람의 집 물건 등에 대해 칭찬이나 감탄을 하는 행동을 자제하여야 함

〈부록 Ⅱ〉 주요 유관기관 정보

■ 주이집트 대한민국 대사관	
웹페이지	http://egy.mofa.go.kr/
주소	3 Boulos Hanna St., Dokki, Cairo, A.R.E
이메일	egypt@mofa.go.kr
전화번호	(20-2) 3761-1238
팩스	(20-2) 3761-1238

■ KOTRA 카이로무역관	
웹페이지	http://egy.mofa.go.kr/
주소	25 Misr Helwan St., Maadi(Entrance1), 4th Floor, El-Zeini Tower Building, Cairo, A.R.E
이메일	ktccairo@kotra.or.kr
전화번호	(20-2) 2380 - 0072, 2380 - 0092
팩스	(20-2) 2359 - 9178

■ 이집트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웹페이지	http://www.mof.gov.eg
주소	Ministry of Finance Towers, Extension of Ramses Street, Nasr City, Cairo
이메일	finance@mof.gov.eg; info@salestax.gov.eg
전화번호	(20-2) 2686-0606/7, 2342-8830/40, 2342-8032/10
팩스	(20-2) 2686-1761/1861/1680

■ 이집트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웹페이지	http://www.mfti.gov.eg , www.mti.gov.eg
주소	2 Latin America Street, Garden City, Cairo
이메일	egypt@mofa.go.kr
전화번호	(20-2) 2792-1193/4/5, 2794-0089
팩스	(20-2) 2795-7487, 2794-0554/8025

■ 이집트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웹페이지	http://www.mohe.gov.eg
주소	3 Magles El Shaab Street, Cairo
이메일	webmaster@mohe.gov.eg
전화번호	(20-2) 2794-1507/0526/0233/2865/3462
팩스	(20-2) 2795-3966

■ 이집트연방 상공회의소(Federation of Egyptian Chambers of Commerce)	
웹페이지	www.fedcoc.org.eg
주소	4 Midan El Falaki St., Bab El Louk, Cairo, 31 Chamber of Commerce St., Mahtet El-Raml, Alexandria
이메일	info@fedcoc.org.eg
전화번호	(20-2) 2795-3677, 2795-2983, 2795-1136
팩스	(20-2) 2795-1164, (20-3) 487-3806

■ 이집트 중앙은행(Central Bank of Egypt)	
웹페이지	http://www.cbe.org.eg/
주소	31 Kasr El Nil St., Cairo
이메일	-
전화번호	(20-2) 2392-6211, 2392-6108
팩스	(20-2) 2392-5045, 2392-6361

■ 이집트연방 관세청(Customs Authority)	
웹페이지	www.customs.gov.eg/
주소	Ministry of Finance, Tower # 3, Third Floor, Nasr City, Cairo
이메일	-
전화번호	(20-2) 2342-2016, 2342-2014
팩스	(20-2) 2342-2280

■ 이집트 수출입감독청(General Authority for Export & Import Control(GOEIC))	
웹페이지	http://www.goeic.gov.eg
이메일	askadmin@goeic.gov.eg
□ 공항청사(Cairo Airport Complex)	
팩스	(20-2) 2576-6971, 2575-8195
□ 공항 사무국(Cairo AirPort Office)	
전화번호	(20-2) 19591, 2268-3251/61

〈부록 Ⅲ〉 이집트 관세법

Customs Law No. 66 of the Year 1963 As amended by law no.
95/2005

Section 1 General Provisions

Chapter 1 Introductory Provisions

Article: 1

The customs region shall be taken to mean the territories and the territorial water subject to the sovereignty of the State. Free Zones not subject to the customs provisions may be established in this region.

Article: 2

The customs line shall be the political boundaries dividing between the United Arab Republic and the adjacent countries and sea shores surrounding the Republic. Nevertheless, shall be regarded as being a customs line the two banks of the Suez Canal and the shores of the lakes in which this canal passes.

Article: 3

The marine scope of customs control shall extent from the customs line to a distance of nautical miles in the seas surrounding the line. But the land scope shall be determined as per a decree to be issued by the Minister of Treasury according to the exigencies of control. Special measures may be adopted within the scope for

controlling some goods which shall be determined as per a decree to be issued by the Treasury Minister.

Article: 4

The customs area shall be the scope which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Treasury at every seaport or airport where there is available customs office in which authority is given for completing all or part of the customs.

Chapter 2
Customs Duties

Article: 5

The goods which enter the territories of the Republic shall be subject to the duties on imports prescribed in the customs tariff in addition to the other prescribed duties save the goods which are excepted under a special provision.

Goods going out of the territories of the Republic shall not, however, be subject to customs duties excepting those for which a special provision is herein contained.

The customs duties and other dues and levies which fall due on the occasion of the arrival of the goods or the export thereof shall be collected in conformity with the regulatory laws and decrees, and no goods may be released before completion of the relative customs formalities and payment of the duties and levies due unless otherwise is provided for in this law.

The amounts of the aforementioned taxes and dues and other amounts payable to the Public Treasury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law shall have prior lien on all property of the debtors thereof or the property of those bound to pay such debts. These amounts shall be collected out of the price of property encumbered with that lien whichever the hand it is held in, before any other claim thereon even if it is a privileged right or guaranteed by a collateral real right, with the exception of legal expenses.

Article: 6

The customs tariff shall be determined and amended as per a decree to be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Article: 7

As per a decree to be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the goods of which the origin or source of countries which have not concluded trade agreements with the Republic containing the most favored country clause, may be subjected to an additional duty equivalent to the duty prescribed in the schedule of customs tariff, providing this additional duty does not fall below of the value of the goods.

Article: 8

Cancelled As Per Law No. 161/1998

Article: 9

The decrees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referred to in Articles , and hereof shall have the force of the law and shall be brought before the legislative Authority immediately after they take effect at its existing session or at the first session to be held by it, and if these decrees are not approved by this Authority they shall cease to have the force of law and shall continue to be valid in relation to the past period.

Article: 10

The Presidential decrees issued for amending customs tariff shall, starting from the time of their entering into force, apply to the goods for which customs duties have not been paid. As to the goods, which are destined for export and for which amounts have been paid on account of the duty before their entering the customs area in whole, the part thereof which has not entered, shall be subject to the tariff in force at the time of entering, and the goods arriving in the name of ministries, departments, general organizations and public authorities, which shall be determined as per a decree to be issued by the Minister of Treasury, shall be subjected to customs tariff in force at the time of authorizing the release of such goods.

Article: 11

Customs duties shall be paid for the goods subject to an advalorem duty according to their condition at the time of applying customs tariff and according to its schedules.

As to the goods subject to a specific duty, this duty shall be paid thereon in full regardless of the condition of the goods unless it is ascertain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that a damage has occurred to the goods as a result of a force majeure, in which case the specific duty may be reduced in proportion to the damage caused to the goods

Article: 12

As per a decree to be issued by the Ministry of Treasury, there shall be determined the rules whereby the calculation of the duty on taxable goods shall be based on the weight and the duty shall be calculated on the packages and containers in which the goods arrive.

Chapter 3
Prohibition and Restriction

Article: 13

A statement shall be submitted in respect of all goods entering or going out of the Republic and they shall be brought before the Authorities at the nearest customs branch as may be determined by the Customs Administration.

Article: 14

As per a decree to be issued by the Minister of Treasury at the proposal of the Director General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 the Customs Administration's branches may be established and their functions determined and so also the types of goods in respect of which formalities are permitted to be completed. The customs guard rooms shall be established and their functions determined as per a decree to be issued b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

Article: 15

Shall be regarded as being prohibited all goods which are not allowed to be imported or exported. If the import or export of goods is subject to restriction by any authority whatsoever, they shall not be allowed to be brought in or sent out unless they are fulfilling the required conditions.

Article: 16

Ships, of which the tonnage falls below marine tons, may not undertake the transport of prohibited goods subject to exorbitant duties to or from the Republic. The Director General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 shall determine the types of goods which are subject to exorbitant duties.

It shall further be prohibited for the ships, of which the tonnage falls below marine tons, and which are loaded with goods of the types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Article, to ramble or change their course within the scope of marine control except in the circumstances arising from a force majeure or marine emergencies. Captains of ships should in such circumstances advise the nearest customs office without delay.

Article: 17

Ships of any tonnage whatsoever shall be prohibited to harbour at other than the ports intended for the purpose or in the Suez Canal or its lakes or in the two months of the Nile without a prior permission from the Customs except in the circumstances arising from marine emergencies or a force majeure. Captains of ships should in such circumstances advise the nearest customs office.

Article: 18

Aircraft shall be prohibited to cross the frontiers at other than the places determined for the purpose or to take off or to land at other than the airports provided with customs offices except in cases of force majeure. Captains in charge of the aircraft should in such cases submit a report to the customs.

Chapter 4 Distinctive Features of the Goods

Article: 19

The origin of the goods shall be the country of their production whether they are agricultural or natural crops or industrial products, and the rules specifying the origin of goods if they are industrialized in other than the first country of production shall be determined as per a decree to be issued by the Minister concerned. The Minister of Treasury shall determine the cases in which the documents in evidence of the origin of the goods should be submitted.

Article: 20

The origin of the goods shall be the country from which they are directly imported.

Article: 21

The type of goods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ir names as indicated in the customs tariff. In the absence of names for the incoming goods, the Minister of Treasury shall issue decrees for such goods to be given treatment akin to that given to the items closely resembling them, decrees which shall be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Article: 22

Subject to international agreements that the Arab Republic of Egypt is party to them, the amount as declared for customs purposes where goods are imported shall be the actual value of the goods to which are added all actual costs and expenses paid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until their arrival at the port of destination in ARE territories. If the value is defined in foreign currency it shall be estimated on the basis of the exchange rate as announced by the Central Bank of Egypt on the date the customs statement is register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and terms to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Finance.

Article: 23

The concerned party shall submit the purchase contracts or original invoices indicating therein the contract terms, as well as the documents connected with the goods, duly approved by a quarter specified or accepted by Customs Department. If it transpires to Customs Department that the documents, wholly or partly, or in some of their data, are incomplete or invalid, the department may not reckon with them. The concerned party shall be informed in writing, and upon its request, of the reasons on which the decision of the Department is based.

Article: 24

The value, which should be declared relatively to the goods destined for export, shall be equal to the normal export price at the time of registering the customs manifesto presented therefore plus all expenses until the place of export. This value shall not include the export duty, the excise and other duties which shall be refunded for goods upon exportation are imposed on the goods when exported.

Section 2 Customs Officials

Article: 25

Customs officials, whose posts shall be determined as per a decree to be issued by the Minister of Treasury, shall be regarded as being members of the judicial officers within the limits of their functions.

Article: 26

Customs officials shall have the right to search the places, persons, goods and the means of transport within the customs area and at the places and warehouses subject to the supervision of the customs. The Customs shall have to take all such measures as are considered adequate for preventing smuggling within the customs area.

Article: 27

Customs officials shall have the right to board the ships within the scope of customs control for searching them or for claiming the presentation of the manifests or other documents required under the prescribed rules. In this connection, they may enlist the assistance of the officials of other authorities.

In the event of the presentation of documents being refused or in the absence of such documents or on suspicion that smuggled or prohibited goods exist; the necessary measures shall be adopted including the use of power for seizing the goods and escorting the ship to the nearest customs branch when required.

Article: 28

Customs officials shall have the right to seize prohibited or monopolized goods through the Republic as long as their availability is against the prescribed rules. In case where there is a strong suspicion that goods are being smuggled, customs officials shall further have the right to search the places and shops within the scope of control in search of smuggled goods.

Article: 29

Customs officials and whoever assist them from among the personnel of the other authorities shall have the right to chase the smuggled goods and to continue doing this when the goods go out of the scope of customs control. They shall further have the right to inspect and search the caravans passing through the desert on suspicion that they are violating the provisions of the law. They shall in such circumstances have the right to seize persons, goods and means of transport and escorting them to the nearest customs branch.

Article: 30

The shipping and transport establishments, and the natural and juridical persons who have any connection with customs operations, shall maintain and keep all papers, registers, instruments and documents connected with these operations.

Importers of foreign goods and those who purchase directly from them for trading

purposes shall maintain and keep the papers and documents establishing the settlement of the tax.

All other holders of foreign goods who keep these goods for trading purposes shall maintain any document indicating the source of these goods.

The Minister of Finance shall issue a decree determining the rules, procedures and periods to be observed in maintaining the papers, registers, instruments and documents referred to in the previous clauses.

The concerned customs officials shall have the right to view and have access to any of the papers, registers, documents and instruments stipulated upon in this article, and seize them in case any violation is established in them.

Article (Bis¹⁴⁷): 30

Unless the perpetrator is caught in the very act, none of the procedures for investigating it may be adopted with regard to any of the crimes committed by the customs administration's employees who have the capacity of officers of law in the course of carrying out their duties, except after getting a written request to that effect from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delegated deputy. In all cases, the criminal action may not be brought against any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s employees except after obtaining such request.

Section 3
Customs Formalities

Chapter 1
Manifests

Article: 31

All goods arriving by sea should be registered in the public and only manifest of the ship cargo. This manifest should be signed by the captain of the ship, and the name

147) Added as per Law No. 95/2005

and nationality of the ship, types of goods, numbers, signs and marks of their parcels, name of the shipper and consignee, description of the covers and the ports of shipment should be indicated in the manifest. Should the goods be of the prohibited type, they should be written down in the manifest in their real names.

Article: 32

The captains of ships or their representatives should, within not more than hours from the arrival of the ship, official holidays excluded, submit to the customs office the manifest of the cargo shipped on board to the Republic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provided for in the preceding Article. In all circumstances, the Customs shall have the right to have access to the public manifest and all documents pertaining to shipment. If the manifest pertains to ships which do not sail on scheduled travels or which do not have shipping agencies in the Republic, or if the ships are sailing boats, the manifest should be endorsed by the Customs authority at the port of shipment.

Article: 33

The captains of ships or their representatives should submit, within the time-limit provided for in the preceding Article, lists giving the names of their passengers and all supplies concerning the ship including the necessary tobacco and alcohols for consumption in the ship as well as the objects which are held by the crew and which are subject to customs duties. They should store the tobacco and alcohols in excess of the requirements of the ship at the time of harbouring in a special depot to be stamped with the stamp of the customs.

Article: 34

Ships may not depart from the ports of the Republic whether loaded or empty except in accordance with a permit from the Customs. For granting this permit, it is a condition to present the manifest or an undertaking from the agent of the maritime company to present the manifest within three days from the departure of the ship.

Article: 35

No mention may be made in the manifest of a number of closed parcels grouped in any manner whatsoever as if they are one parcel.

Article: 36

No goods may be unloaded from the ships or carriers or boats or loaded unto them or transported from one to another ship except in accordance with a permit from the Customs.

Article: 37

Captains of ships, aircraft, and other means of transport, or their representatives shall ascertain that the amount of goods or the number of parcels or their contents are conforming to the list of shipment (manifest) and shall preserve and maintain them until their complete delivery at the Customs Stores, or the warehouses, or to the concerned parties. A decree of the Head of Customs Department shall determine the percentage of tolerance in bulk goods (more or less) and also the partial shortage in goods resulting from natural factors or weakness in the wrappings and the leakage and outflow of their contents.

Article: 38

“The responsibility for violat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37) of the present law shall be removed in the following cases: If the missing goods or parcels have not originally been loaded from the shipping port. If they were loaded but have not been unloaded inside the country, or have been unloaded outside it. If the vessels’ holds have sound seals, or if the containers have arrived bearing sound seals and numbers in conformity with what is indicated in the bill of lading, or if the parcels have been delivered in an outward sound condition, the case in which the availability of a decrease before loading may be possible. The reason for the decrease in the cases mentioned in the aforementioned three item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conditions set by the executive regulations of this law.”

Article: 39

For the goods transported by air, there should be presented manifests signed by the crew in charge of the aircraft on arrival or before departure of the aircraft. The other provisions concerning the goods transported on board of the ships shall apply to these goods.

Article: 40

The provisions of Articles through shall apply to goods arriving by land, and the Director General of the Customs shall determine the direct methods of bringing in and sending out these goods. The goods arriving overland should be brought before the nearest customs office to the frontiers, and the owners of the goods or those accompanying them to keep to the road or path directly leading to this office. For these goods there should be presented a special manifest for each of the units of transport in compliance with the stipulations of Article of this law. Concerning the goods arriving by railways, the manifest should be signed by the railway official concerned at the dispatch station as well as by the railways representative on the train, and shall be endorsed by the export customs or the first local customs office from where the goods have entered.

Article: 41

Captains of ships or transport organization or their representatives shall have to present to the customs the manifests or their summaries pertaining to the goods which are unloaded at the free zones forthwith the goods are unloaded. The authority undertaking the management of the free zone shall have to submit to the customs within hours a table for each ship or train or any other means of transport, containing descriptions of the goods unloaded as to the number, type, marks, figures and the source from which they have been shipped

Article: 42

Incoming or outgoing goods through the post shall be accepted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postal agreements, and the postal Authority shall have to bring before

the customs authorities, within the limits of these agreement, parcels post, packets and wrappings which are subject to customs duties or to special restrictions or formalities.

Chapter 2

Customs Statements

Article: 43

A detailed statement (Customs Declaration) shall have to be presented to the customs in respect of any goods before commencing the customs formalities even if such goods are exempted from customs duties. This statement shall include all information and explanations as well as the elements enabling customs schemes being applied and duties being paid when required. The form of this statement and the documents to be enclosed shall be determined as per a decree to be issued by the Minister of Treasury.

Article: 44

The statement provided for in the preceding Article shall be submitted by factory owners or their attorneys, who are acceptable to the customs, or by authorized clearing agents, and the signatory of the statement shall be regarded as being responsible for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without prejudice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owner of the goods.

Article: 45

The customs statement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customs and shall be given a serial number, after ensuring that the provisions of the two preceding Articles have been carried into effect.

Article 46

The explanations contained in the customs declaration submitted to the customs department may be modified before determining the parcels that are subject to

inspection. The material mistakes occurring during any one of the stages of release may be rectified.

Article 47

The owners of the goods or their representatives may request to have access to their goods, inspect and obtain samples thereof when requir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ustoms officials.

Article 48

The Holder of the delivery order of the goods shall be regarded as being the deputy of the owner in taking delivery thereof and the customs shall not be held responsible for delivering the goods to him

Article 49

Shall be regarded as a clearing agent every natural or Judicial person who undertakes to prepare, sign and present the customs statement to the customs and complete the procedures in respect of the goods for the account of third parties. He may not undertake his work as a clearing agent until after obtaining a permit from the Customs Administration. The Minister of Treasury shall determine the conditions of granting the permit, the regime concerning clearing agents and the competent disciplinary authority to deal with contraventions committed by and the penalties to be imposed on them.

Chapter 3

Inspection and Withdrawal of the Goods

Article 50

After registration of the statement, the customs shall undertake to inspect the goods and ascertain their type, value; origin and those they comply with the certificate and the relative documents. Customs may or may not inspect all or part of the goods according to the rules to be issued b the Director General of the customs.

Article 51

The parcels may not be opened for inspection except in the presence of the interest parties.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customs may, subject to a written permission from the local chief, open the parcels on suspicion that they contain prohibited materials without the interested parties being present after the expiry of one week from advising them thereof. A report to this effect shall be drawn up by the committee which shall be set up for the purpose. Nevertheless, as per a decree to be issued b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Customs in case of necessity, parcels may be opened without the interest parties being present by the committee which shall be set for the purpose.

Article 52

Inspection shall take place at the customs area. Permission may in some cases be given for the inspection to be carried out outside the customs area at the request and at the expense of the interested parties according to the rules which shall be established b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

Article 53

Customs may under all circumstances re-inspect the goods as long as they are under its control.

Article 54

Customs shall have the right to analyze some materials with a view to ascertaining their type, specifications or their compliance with health and agricultural regulations and otherwise. The analysis may be carried out at the request and expense of the interested parties. The interested parties may object against the result of the analysis which has been carried out at request of the customs or may request the analysis be repeated at their expense. The rules regulating these formalities shall be determined as per a decree to be issued by the Minister of Treasury.

Article 55

Customs shall undertake to destroy the materials, which the analysis proved being harmful, at the expense and in the presence of the owners thereof unless they undertake to re-export such materials during the delay to be determined by Customs. These materials shall be destroyed in the presence of the interested parties at the time to be fixed to them by Customs. In the event of their failure to be present, the materials shall be destroyed without their presence, and a report to this effect shall be drawn up.

Article 56

When the state of emergency is declared, measures may be adopted for the withdrawal of the goods against special guarantees and under special conditions to be determined as per a decree to be issued by the Minister of Treasury.

Chapter 4
Arbitration

Article 57

In case a litigation arises between customs department and the concerned party on the type, origin or value of the goods, and the concerned party or his representative requests that the dispute be referred to arbitration, and customs department concedes thereto, the litigation shall be referred to an arbitration committee to be formed under one of the judiciary bodies' members whose grade is same as or equivalent to that of a President of a court, to be chosen by the body, and appointed by a decree of the Minister of Justice, with the membership of an arbiter from Customs Department to be appointed by the Head of the Department or his deputizing assignee, and an arbiter to be chosen by the concerned party or his representative. The committee shall issue its substantiated decision, with the majority of views. If the decision is issued unanimously, it shall be final and mandatory to the two parties and incontestable except in the cases prescribed in the Law on Arbitr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as promulgated by law no. 27 of the year 1994.

A non-final decision of the Committee may be traversed before a higher arbitration committee to be formed under a member of the judiciary bodies with at least a counselor's grade or its equivalent, to be chosen by the body and appointed by a decree of the Minister of Justice, with the membership of an arbiter for Customs Department to be chosen by the Head of the Department or his deputizing assignee, and an arbiter to be chosen by the concerned party or his representative.

The higher arbitration committee shall decide the litigation by virtue of a substantiated decision issued with the majority of views. The decision shall comprise a statement indicating the party that shall bear the arbitration costs.

The decision of the higher arbitration committee shall be final and binding to the litigation parties. It shall be incontestable except in the cases prescribed in law no. 27 of the year 1994 referred to. If the non-final decision of the committee is not traversed, the concerned party may traverse that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cases prescribed in law No. 27 of the year 1994 referred to. The rules and procedures prescribed in law No. 27 of the year 1994 referred to shall be applied to the arbitration where no special provision is mentioned in the previous clauses.

Article 58

In order that arbitration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previous article, the goods are stipulated to be still under customs department's control, except in the cases an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and terms to be determined by a decree issued by the Minister of Finance.

Section 4 Special Customs Schemes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59

The goods may be admitted or transported by land or by sea or by air from one to another place within the Republic or otherwise and suspending the payment of customs duties and other dues and levies due thereon being suspended according to the terms, conditions and periods to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Treasury.

Article 60

The goods provided for in the preceding Article shall be subject to the duty in force at the date of payment of the duties and levies due thereon by way of deposit or at the date of registration of the undertaking in case where the periods referred to in that Article are not observed.

Article 61

National and foreign goods, for which customs duties have been paid, may be transported from one to another place within the Republic without having to pass at foreign ports according to the conditions to be determined by the Customs.

Article 62

Foreign goods, for which customs duties have not been paid and which are not subject to one of the special schemes contained in this law, may be returnee abroad or transferred from one to another place within the Republic, or condition of the necessary guarantees being submitted and the formalities to be determined b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Customs being complied with.

Chapter 2 Transit Goods

Article 63

Foreign goods which are produced under the scheme of transit goods may be transported without taking the sea route whether they entered the borders to go out directly from other borders or whether they are dispatched from one to another branch of the Customs.

Article 64

Formalities pertaining to transit goods may not be allowed to be carried out except at the branches of the Customs intended for the purpose and after payment of the customs duties and other levies due thereon by way of deposit or after presentation of guaranteed undertaking to dispatch the goods to their destinations within the fixed period.

Article 65

Transit goods shall not be subject to the restriction and prohibition unless otherwise is provided for in the decrees issued in this connection.

Article 66

The arrival of the goods at their destinations in the foreign countries shall be evidenced by the presentation of a certificate from the Customs of these countries acknowledging the receipt thereof, and the Customs shall have the right to grant exemption from the presentation of this certificate or to accept any other evidence.

Article 67

The goods shall be transported according to the transit scheme on all roads and by all means of transport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signatory of the transit undertaking.

Article 68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statement and inspection as provided for in this law shall apply to the goods referred to in the foregoing Article.

Article 69

Transit goods or any means of transporting them or both shall be stamped in the manner to be determined by the Customs, and the signatory of the undertaking shall be held responsible for the damage being caused to the stamps or the goods being tampered with.

Chapter 3
Warehouses

Article 70

Warehouses shall be taken to mean the storage facilities where incoming goods shall be accepted without payment of customs duties for the periods to be determined by this law. The warehouses shall be divided into two types, namely a public warehouse where goods are stored for the account of third parties and a private warehouse where the owner thereof stores his incoming goods authorized to be stored therein.

I - The Public Warehouse:

Article 71

As per a decree to be issued by the Minister of Treasury upon the proposal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 the scheme of the public warehouse shall be authorized to enter into operation. The storage and other expenses as well as the fees due for payment to the Customs Administration, the guarantees to be offered and other stipulations pertaining to the warehouse shall be determined as per a decree to be issued by the Minister of Treasury. The terms and conditions concerning the specification and management of the warehouse shall be determined as per a decree

to be issued by the Minister of Treasury in agreement with the Minister concerned.

Article 72

The period of stay of the goods at the public warehouse shall be fixed at six months which may be extended for another three months when required in accordance with a special request to be approved b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Customs. The period may, in cases of necessity, be reduced or extended as per a decree to be issued by the Minister of Treasury.

Article 73

Shall not be permitted to be stored in the public warehouse prohibited goods, explosives and similar materials, inflammable materials, goods displaying symptoms of contamination and those the availability of which at the public warehouse exposes them to risks or may cause damage to the other goods, the goods the preservation of which requires special installations and the goods in bulk unless the warehouse is intended for the purpose.

Article 74

The goods shall not be accepted at the public warehouse unless they are accompanied by a warehouse warrant. This warrant shall be presented and the goods inspec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to be determined by the Customs Administration.

Article 75

The Customs shall have the right to exercise control on the public warehouses which are operated by the other authorities, and the authority exploiting the warehouse shall be held responsible for the goods stored therei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s in force.

Article 76

The authority exploiting the public warehouse shall replace the owners of the

goods stored therein vis-a-vis the Customs as to all their obligations arising from storing these goods.

Article 77

The goods stored at the public warehouse shall be sold in accordance with the stipulations provided for in Section should the interested parties fail to return them abroad or pay the Customs duties payable thereon during the period of storage, a sale which shall be effected after one month from the date of serving a notice on the exploiting authority.

Article 78

The Customs shall have the right to authorize the following operations being carried out at the public warehouse under its control: (a) to mix foreign products with other foreign or domestic products for the purpose of re-exporting them only. In this case, it is a condition to put special marks on the coverings and allocate a special place for them, (b) to remove the coverings, to transport from one to another container, to collect or divide the parcels and to carry out all work intended for maintaining the products or improving their appearance or facilitating the disposal thereof.

Article 79

Customs duties shall be assessed on the goods, which have previously been stored at the public warehouse, on the basis of the weight and number thereof at the time of storage. The authority exploiting the warehouse shall be held responsible for the customs duties, other dues and levies due for each shortfall, loss or change in these goods, besides the fines to be imposed by the Customs. These duties and levies shall not fall due if the shortfall or loss or change is due to natural causes, a force majeure reason or an accident beyond control.

Article 80

Goods may be transported from one to another public warehouse or to one of the

branches of the customs as per guaranteed undertakings. The signatories of these undertakings shall have to present a certificate for admitting the goods to the public warehouse or to the customs storage facilities for storing or withdrawing them for consumption or for subjecting them to any other customs scheme.

II- Private Warehouse

Article 81

Authorization may be given for the establishment of a private warehouse at the places where branches of the Customs are available if an economic necessity so requires. The business of the private warehouse shall be liquidated within not more than three months from date of canceling the customs branch.

Article 82

The license establishing the private warehouse shall be issued as per a decree by the Ministry of Treasury upon the proposal of the Director General of the Customs. The decree shall determine the location of the warehouse, the rent to be paid annually, the guarantees to be offered and the other stipulations. Shall also be determined as per a decree to be issued by the Minister of Treasury in agreement with the Minister concerned the terms and conditions concerning the specifications and management of the warehouse.

Article 83

The goods deposited with the warehouse should be presented on each demand by the customs, and any shortage occurring for any reason other than that arising from such natural causes as evaporation, dryness or leakage or the like may not be disregarded.

Article 84

The goods, of which importation is prohibited, shall not be allowed to be deposited with private warehouses except with a special permission from the Director General

of the Customs,

Article 85

The provisions of Articles 72, 74, 75, 76, 77 and 80 shall be applied to private warehouses.

Chapter 4
Free Zones¹⁴⁸⁾

Chapter 5
Temporary Exemption

Article 98

There shall be exempted temporarily from the customs taxes and other taxes and fees the primary materials and intermediate goods that are imported with the intent of manufacturing them as well as the production requisites of exported goods and the items imported for the object of repairing or completing the manufacture thereof. Pursuant to a presentation by the Minister of Finance and the Minister concerned with Foreign Trade, a decree shall be issued by the Prime minister showing the cases, the terms and procedures in which there will be temporary exemption against the depositing of a security or a surety of the value of the taxes and fees due as well as the cases in which no such security or surety is to be deposited. The said materials and items shall also be exempted from the import rules provided for in the laws relevant to importation.

The said materials and items may be disposed of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for which they were imported, subject to satisfaction of the import rules and payment of the taxes and fees due on the date on which such materials and items entered into the country plus a surtax at the rate of (2%) monthly of the value of the taxes and fees due for each month of delay. Importer shall,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ustoms

148) Free zones have been fully reorganized by virtue of Law No. 43 for the year 1974 on the investment of Arabic

Administration, submit thereto an adequate annual inventory in which to show the materials that had been disposed of for other than their intended purposes. The amounts due thereon shall be settl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In cases other than those provided for in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for the said materials and items to be disposed of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intended from their import without referring to the Customs Administration, the taxes and fees due on the date on which such materials and items entered into the country will have to be paid plus two times as much as the surtax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The security or surety aforementioned shall be refunded forthwith in the proportion of what had been transferred by importers or by third parties of the manufactured products or items to some free zone or had been exported out of the country or had been sold to bodies enjoying complete exemption from taxes and fees or to bodies which paid the taxes and fees due in respect thereof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within two years from the release date. Should the said time-limit expire without this completed, the said taxes and fees shall become payable. Such time-limit may be extended for other term(s), not to exceed two years, by a decree of the Minister of Finance or whoever is delegated thereby. The equivalent of the value of the partial exemption from the taxes and fees due on the end products or the items referred to in the first paragraph of this article shall be refunded if the sale was made to bodies enjoying partial exemption. The rules and procedures regulating temporary allowance and the systems of returning the security or surety aforementioned shall be decreed by the Prime minister pursuant to a presentation by the Minister of Finance and Minister concerned with Foreign Trade.

Article 99

Shall be determined as per a decree to be issued by the Minister of Treasury in agreement with the Minister of Industry the materials and items which are subject to this scheme and the industrial operations to be carried out thereon, as well as the percentage of industrial waste and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his.

Article 100

If the industrial operations, which have been carried out on the items referred to, have changed their features to such an extent as to render it difficult to recognize their kind suffice it for the exported products to be of the type in the manufacture of which usually enter the imported items in accordance with a decree to be issued by the Minister of Treasury in agreement with the Minister of Industry.

Chapter 6
Temporary Release

Article 101

The goods may temporarily be released without charging the prescribed customs duties and dues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to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Treasury. The Minister of Treasury shall establish special regulations for facilitating the release of the goods arriving in the name of Ministries, government departments, general organizations and the companies belonging thereto according to the conditions and formalities to be determined by him.

Chapter 7
Refund Of Customs Taxes

Article 102

The customs taxes and fees as well as the service fees charged to the foreign materials that had been used in the making of local exported products shall be refunded provided that they should have been transferred to a free zone, have been re-exported or have been sold to bodies enjoying complete exemption from such taxes and fees, within a period not to exceed two years from the release date. Such period may be extended for other period(s) up to two years maximum by a decree of the Minister of Finance or whoever is delegated thereby. The equivalent of the value of partial exemption from taxes and fees shall be refunded if the sale was made to bodies enjoying partial exemption. Refund shall take place immediately after the

transfer to a free zone or completion of the export or sale in the above-mentioned cases, within not later than one month from the date of submitting an evidence of the same. A special account may be opened for this purpose,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Finance, at some commercial bank in which to deposit a percentage of the proceeds drawn from the drawback system.

Article 103

The rules and procedures regulating the refund of customs taxes and other taxes and fees on the foreign materials that were used in the production of exported goods and the industrial processes performed thereon and the percentage thereof as well as the requirements that have to be satisfied for the same shall be determined by a decree to be issued by the Prime minister pursuant to a presentation by the Minister of Finance and the Minister concerned with Foreign Trade.

Article 104

If the industrial operations, which have been carried out on the items referred to, have changed their features to such an extent as to render it difficult to recognize their kind, it may suffice for the products exported to be of the type in the manufacture of which usually enters the imported items themselves on condition of these items being previously imported from abroad.

Article 105

Customs and consumption duties shall be refunded upon exporting the imported foreign products, which have no locally produced substitute, on addition of the sample thereof being ascertained and export being carried out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payment of the duty according to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which shall be issued a decree by the Minister of Treasury. Shall also be refunded the customs duties and other dues which have previously been collected upon exporting machinery or equipment or goods which have previously been imported and the acceptance of which has finally been refused for any reason, on condition of the export thereof being affected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payment of the duty.

Article 106

Shall be refunded the customs duties previously collected at the time of export in respect of domestic goods and products if they are re-imported from abroad or withdrawn from the free zone in the condition in which they have been at the time of export or at the time of entering the free zone according to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which shall be issued a decree by the Minister of Treasury.

Section 5
Customs Exemptions

Articles from 107-110

This Chapter has been eliminated by virtue of law no. 19 for the year 1983 and replaced by law no. 186 for the year 1986 and its amendments concerning the Customs Exemptions.

Section 6
Services Charges

Article 111

The goods which are deposited with storage yards, stores and warehouses, which are administered by the Customs, shall be subject to storage, portage and insurance charges and the other additional charges required by the operations of depositing and inspection of the goods and all other services provided by the Customs. The goods which are deposited with the free zones shall not, however, be subject to other than the charges in respect of occupying the zones where they are deposited and the charges in respect of the services provided to them. The prices of printed matters and the rates to be charged in respect of the services referred to in the aforementioned two paragraphs shall be fixed as per a decree to be issued by the Minister of Treasury, and the Minister, or whoever is deputised by him, shall have the right to reduce or grant exemption from the storage charges in the cases to be designated by him.

Article 112

The wages in respect of the work to be undertaken by the customs officials for the account of the interested parties in other than official working hours or outside the customs area shall be determined as per a decree to be issued by the Minister of Treasury.

Article 113

The charges and wages provided for in the two foregoing articles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exemption from or the refund of the taxes referred to in this law.

Section 7

Customs Contraventions

Article 114

“A fine amounting to L.E. shall be inflicted on the captains of vessels, aircraft and other means of transport in the following cases: Failure to submit the manifest, its non-existence, its plurality, delaying its submission or refraining from submitting any other document when required by the customs. The omission of what shall be included in the manifest. The moorage of vessels, landing of aircraft, or parking of other means of transport within the customs circle in other than the places determined for them by the customs department. Loading, unloading or transferring the goods from one means of transport to another whatever its kind without an authorization from the customs department, or without the presence of the customs employees. Unloading the goods within the customs circle in other than the places appropriated for that purpose. The departure of vessels, aircraft, or other means of transport from the customs circle without a pennit to that effect. The customs department shall have the right to remove the causes for the violation at the expense of the violator.

In all cases, the customs department shall not delay the release, unloading, or transporting of goods in discharge of the above-mentioned fine. The customs department may not claim from the parties in whose names the goods have been

imported, to pay their value”.

Article 115

Subject to any stricter penalty provided for in the law, a fine amounting to L.E. shall be inflicted in the following cases:

1. Preventing the customs employees from carrying out their duties, and exercising their rights of inspection, verification, and having access to the relevant documents.
2. Failure by the customs brokers to follow the statutes that determine their duties.
3. Failure to maintain the seals affixed to the parcels, or other means of transport without leading to a decrease or a change in the goods.
4. Failure to follow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article of this law.

Article 116

A fine not exceeding three hundred Egyptian pounds shall be imposed, if the Customs duties that are exposed and liable to be lost do not exceed one thousand Egyptian pounds in the following cases:

1. Possession or transport of goods within the scope of Customs Control, contrary to Customs Statutes.
2. Entry or exit of the goods into or from the Arab Republic of Egypt or embarking on doing that without a Customs statement, or through other than the Customs channels or offices.
3. Import - by post - of closed rolls, or boxes carrying no regular cards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postal conventions/agreements.
4. Contravening the regulations and systems of transit, warehouses, free zones, temporary admission, temporary release, or exemptions.

Article 117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38) of this law, and any stricter penalty prescribed by the law, whoever causes premeditatedly or by negligence an increase in the items listed in the manifest, in terms of the number or contents of the parcels, or

the bulk goods, shall be liable to a fine equals one quarter of the customs duty that is exposed to loss. If the goods in excess are found to carry the same numbers and marks that are placed on other parcels listed in the manifest, then the parcels on which bigger taxes and duties are due shall be considered the parcels in excess.

Article 118

A fine equals one quarter of the customs duty that is exposed to loss shall be imposed in the following cases:

1. Submitting incorrect data concerning the country of origin and the kind of goods.
2. Violating the transit, warehouses, free zones, temporary admission, temporary release, exemptions, and other special customs systems, if the customs duties that are exposed to loss exceed one thousand pounds.
3. Failure to maintain the papers and documents, or non-submitting them,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30) of the present law.

A fine equals 15% of the customs duty that is exposed to loss shall be inflicted in case of submitting data concerning the evaluation of the imported goods for customs purposes in such a way that decreases the customs duty by more than 20%, providing the customs department shall abide by the agreement regarding the evaluation of imported goods for customs purposes.

Article 118 (Bis)¹⁴⁹⁾

In case the violations mentioned in articles nos. (114, 115, 116, 117 and 118) of this law are committed by a juridical personality, the official in charge of the actual management of that violating juridical personality shall be liable to the same penalties prescribed with regard to the acts committed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se articles, whenever the fact that he was aware of such violations is established, and the crime took place due to his default in carrying out his duties. The juridical personality shall be jointly responsible with that official for settling the fines ruled in case the crime is committed by one of its employees in its favor and on behalf of it.

¹⁴⁹⁾ Added as per Law No. 95/2005

The goods shall act as a security for the fines imposed in respect thereof in case the violation is committed by the person in possession of such goods or his representative.

Article 119

The fines and compensations prescribed in articles 114, 115, 116, 117, and 118 of the present law shall be ruled by virtue of a Court criminal warrant, according to the rules and procedures prescribed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upon the request of the Head of Customs Department or his deputizing assignee. The Head of Customs Department or his deputizing assignee may accept arranging a composition until before a peremptory ruling is passed in the court action, against settling not less than the minimum of the aforementioned fines and compensations. The composition shall result in abating the criminal action. The fines and compensations shall be collected in favor of Customs Department. In all cases, the goods shall be a security for settlement of the fines and compensations.

Article 120

The captains of ships and aircraft and the drivers of the other means of transport shall be regarded as being responsible under the civil law for each contravention pertaining to the crew of the ships, aircraft or the means of transport. The ships, aircraft and other means of transport shall be a guarantee for the payment of the customs duties and fines.

The owners of the goods shall be regarded as being responsible for the acts of their employees as well as for the acts of the clearing agents to the preparation of customs information and formalities, and the clearing agents shall be answerable for their acts and those of their employees in this connection.

Section 8 Smuggling

Article 121

Shall be regarded as smuggling the bringing in or sending out of goods of any type from the Republic through illegitimate means without payment of all or part of the customs duties payable or in contravention of the schemes in operation in connection with prohibited goods.

Possessing foreign goods for trading purposes, while knowing they are smuggled goods, shall be considered as good as smuggling. Submitting false and fabricated documents or invoices, placing phony marks, concealing and hiding the goods or marks, or committing any other act aimed at getting rid of due customs taxes, wholly or partially in violation of the systems in force concerning the banned goods, shall also be considered as good as smuggling.

The failure to seize the goods shall not preclude from proving that smuggling has taken place.

Article 122

Subject to any stricter penalty prescribed by any other law, whoever perpetrates the crime of smuggling shall be liable to a penalty of imprisonment and a fine not less than five hundred pounds and not exceeding ten thousand pounds, or either penalty.

If the crime of smuggling goods is perpetrated for trade purposes, then the penalty to be inflicted shall be an imprisonment term not less than two years and not exceeding five years, and a fine not less than one thousand pounds and not exceeding fifty thousand pounds, or either penalty.

Whoever possesses smuggled goods for trade purposes while knowing that they are smuggled, shall be liable to a fine less than one thousand pounds and not exceeding fifty thousand pounds.

In all cases a court ruling shall be pronounced inflicting on the perpetrators, their accomplices and the juridical personalities in whose favor the crime was committed jointly, the payment of a compensation equivalent to the amount of the due customs

duties. If the goods, subject of the crime are of the prohibited kinds or their import is banned, the compensation shall be equivalent to twice their value or twice the due customs duties, whichever is bigger. In such case, a court ruling shall be pronounced confiscating the smuggled goods.

However, in case these smuggled goods are not seized, a court ruling shall be pronounced to the effect of paying an amount equal to the value of these goods.

A court ruling may be pronounced confiscating the means of transport, tools and materials that have been used in the crime of smuggling, with the exception of vessels and aircraft unless they were actually prepared or chartered by their owners for that purpose.

The infliction of the stricter penalty with regard to the crimes committed in association with smuggling shall not prevent the infliction of the aforementioned compensation and confiscation.

Smuggling actions, when referred to the court, shall be heard expeditiously.

Article 123

The penalties prescribed in the second and fourth clauses of article (122) of the present law shall be inflicted on whoever refunds by way of forgery, all or part of the customs duties or the other taxes, as well as the amounts paid on account of these duties or taxes or the guarantees submitted in their respect. The compensation shall be equivalent to twice the subject amount of the crime.

Article 124

The criminal action may not be brought in the crimes of smuggling prescribed in the previous articles, except upon a written request from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delegated deputy.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delegated deputy shall have the power to accept the conciliation in any of such crimes in return for paying the compensation amount in full at any one of the criminal action stages. If the goods, subject of the crime are of the prohibited kinds or their import is banned, the compensation shall be calculated on basis of the customs duty or the value of the goods, whichever is bigger.

In case of conciliation, the seized goods shall be returned after settling the taxes due thereon, unless they are of prohibited kinds or their import is banned. The means of transport, tools, and materials used in the crime of smuggling shall be also returned.

The compensation amount referred to above shall be doubled in case the conciliation takes place in respect of a crime of smuggling committed by a convict who had committed during the last five years another crime of smuggling in whose respect a final court ruling of conviction was issued, or the criminal action in regard thereof was abated by conciliation.

The conciliation shall result in abating the criminal action as well as all the effects resulting from the ruling. The Public Prosecution shall order staying the execution of the criminal penalty if the conciliation takes place in the course of its execution, even if the ruling is final.

Article 125

The customs shall have the right to dispose of the goods, means of transport, tools and materials which have finally been pronounced to be confiscated.

Section 9 Selling of Goods

Article 126

The customs shall have the right to sell the goods which have remained for a period of four months at the customs stores or on quays and that after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Treasury. The Minister shall have the right to reduce this period in the cases of necessity.

As to the goods which are liable to decrease or deterioration, they may not be held at the customs except for the period which their condition permits and if they are not withdrawn during this period, a report on their condition shall be drawn by the customs and the goods shall automatically be sold by the customs without the need to advise the interested parties.

The provisions of paragraph - 1 shall apply to the objects which are left by passengers at the customs offices.

Article 127

Prior to a judgment being delivered by the competent court or a decree being issued by the Authority concerned as the case may be the Customs shall have the right to sell the goods and objects which are liable to deterioration or exposed to leakage or decrease as well as the animals kept with the customs as a result of a dispute or seizure. Sale shall be effected after a report on the circumstances justifying the sale being drawn up by the official concerned.

If, after the sale, a pronouncement is passed for returning the goods or the objects referred to or the animals to their owner, the balance of the price shall be paid to him after deduction of all expenses.

Article 128

The customs shall have the right to sell also:

1. The goods and objects which have devolved to the customs as a result of a reconciliation or assignment.
2. The goods which have not been withdrawn from the general or private warehouses during the period fixed for the purpose, with due regard to the provision of article (77).
3. The remainders of the goods and objects of a negligible value of which the owners have not been identified and which have not been claimed during three months.

Article 129

The sales provided for in the preceding articles shall be effected according to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which shall be issued a decree by the Minister of Treasury and such goods shall be sold after payment of the customs duties and other duties and taxes, and the price shall be paid immediately.

Article 130

The proceeds of sale shall be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order:

1. Selling expenses and expenses of whatever type which have been spent by the customs,
2. Customs duties,
3. Other dues and levies,
4. The expenses spent by the owner of the warehouses.
5. Storage charges.
6. Freight,

The balance of the selling price of the goods authorized to be imported shall, after deduction of the above expenses, be deposited with the cash office of the customs, and the interested parties shall have the right to claim it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sale, failing which it shall become the right of the State Treasury.

The Balance of the selling price of the goods prohibited to be imported shall, however, become the right of the State Treasury.

Article 130 Bis

If the goods set forth in article (126), and items (2, 3) of article (128) of the present Law have been put up for sale at least twice, in accordance with the prescribed rules and procedures, and their owners failed to withdraw them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last time of putting them up for sale, their owners shall be considered to have relinquished them with the purpose of waiving their ownership to the state once their owners have been notified thereof by registered letter with acknowledgment of receipt with the lapse of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at notification.

The Customs Department, after obtaining a writ on a petition from the competent judge may dispose of the goods referred to in the foregoing clause to the governmental quarters, the public juridical persons, or public benefit societies, for free or with charges to be agreed upon with them according to the situations and procedures to be issued by decree of the Minister of Finance following approval by the concerned quarters. In this case, the goods waived or disposed of shall be exempted from the taxes and customs duties, the general sales tax, and services fees.

Article 131

The Minister of Finance shall set one or more statutes for remunerating the employees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 in light of their rates of performance and standards of achievement in work, without being restricted by any other statutes and after consulting the view of the Prime Minister.

The State's General Budget shall provide for allocating moneys for contributing to the social cooperation and saving funds, the joint funds, as well as the sporting clubs concerned with the administration's employees.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이집트

2015년 12월 23일 인쇄

2015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박 형 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ISBN 978-89-8191-813-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